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근현대 법의 지배와 공간 이해의 변화

| 일시: 2016년 12월 16일 14:00~17:30

| 장소: 전주대학교 지역혁신관 508호

| 주최: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군산대 문화사상연구소

| 주관: 전북사학회

| 후원: 한국연구재단

이 발표논문집은 2014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으로 한국연구재단지원 (대학중점
연구소지원사업)을 받아 발간되었습니다.
과제번호: 2014S1A5B8063617



사회 : 박학래(군산대)

시간	발표자	제 목	토론자
13:30~14:00		등록 및 접수	
14:00~14:05		개회사	
14:05~15:05	원재연 (전주대)	대한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 - 인천 감옥과 전주 감옥을 중심으로	이선아 (전북대)
15:15~16:15	서종태 (전주대)	구한말 천주교 신앙자유의 법제화 과정 - 전북지역과 관련하여	방상근 (내포교회사연구소)
16:25~17:25	이정욱 (전주대)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 -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	하채현 (군산대)

대한 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

- 인천 감옥과 전주 감옥을 중심으로 -

원재연 (전주대)

<목차>

- I. 머리말
- II. 체옥(滯獄)과 보방(保放), 석방(釋放)
 - 1. 체옥과 옥비(獄費)
 - 2. 체옥의 개선 - 보방과 석방
- III. 탈옥(脫獄)과 기강 확립
 - 1. 감옥 관리의 부실과 탈옥
 - 2. 옥리의 기강 확립과 탈옥자 체포
- IV. 맺음말

I. 머리말

대한제국기는 고종과 그의 측근 개화관료들을 중심으로, 갑오~을미개혁에서 진행된 법제 개혁을 계승하여, 감옥제도의 개선을 위해 특히 노력하였다. 고종은 여러 차례 사면령을 내려 흉악범 등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감형(減刑)이나 석방[放送] 등 특사(特赦)를 광범하게 실시했는데, 이는 대한제국 출범의 정당성(正當性)을 강조하기 위한 경축사면(慶祝赦免)의 형태로 전개되었다. 당시 이같이 잦은 사면령의 실시 이면에는, 징역형(懲役刑)의 도입과 함께 구비해야만 했던 근대적 행형시설, 즉 감옥시설이 제대로 구비되지 않았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 최근에 자주 인용되고 있는 『사법품보』와 『법부기안』 등 1890년대 우리나라의 재판 관련 관찬기록들에서는 당시 대부분의 지방에서 노후화된 감옥 시설을 어떻게 정비할지, 또 턱없이 부족한 감옥 운영비용을 어떻게 조달할지, 또 오랫동안 감옥에 체류되어 있는 미결수(未決囚)들을 어떻게 해소할지에 대한 고민과 탄원, 간청이 혼재된 기사들이 자주 등장한다. 또한 감옥 시설의 노후 및 관리들의 기강 해이를 틈타 일어난 탈옥(脫獄) 사건들도 상당수 나타난다. 그런데 이들 기사들은 서로 연관이 깊은 경우가 많다. 즉 체옥(滯獄)은 감옥 운영의 비용 증가로 연결되고, 미결수의 정체는 체옥 현상을 가중시킨다.¹⁾ 한편 감옥 시설의 노후화(老朽化)는 감옥 운영비용의 부족 때문에 심화된다. 또 뇌물을 받고 고의로 탈옥을 시켜주거나 죄수들의 관리 감독을 느슨하게 하는 등 감옥 관리들의 근무 기강 해이도 제때에 관리들에게 충분한 급료를 지급하지 못하는 비용부족의 문제 때문에 일

1) 조선시대 이래 ‘체옥(滯獄)’은 미결수(未決囚)의 문제만이 아니라, 기결수(既決囚)이지만 행형(行刑)을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 옥에 체류(滯留)하면서 대기(待期)하는 살옥사건(殺獄事件) 죄수들의 존재도 중요한 요인이었다. 또 범죄자가 도주한 경우 그 가족들이 대신 오랫동안 구금되는 경우도 많았다.

어나는 측면이 적지 않다. 따라서 본고에서 제기하는 대한제국기 상당수 지방 감옥에서 드러나는 부정적이고 열악한 실상은 근본적인 문제인 재정적 요인 때문에 제기되는 측면이 강하다. 그러므로 보방(保放)과 석방의 실시 및 감옥 관리들에 대한 인사행정(人事行政) 등 감옥운영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열악한 시설(施設)이나 관리들의 부패(腐敗), 기강해이(紀綱解弛) 등으로 야기된 감옥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었고, 그 한계점이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정부는 서울과 경기도 및 각 지방 개항장(開港場) 등 비교적 재정 여건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역부터 감옥 시설을 근대화하면서, 지속적으로 감옥 관계 법령을 정비하여 나갔다.

본고는 이러한 대한제국기 재판관련 자료들에서 드러나는 지방 감옥의 실상과 관리상의 문제점 등에 대한 구조적 분석을 통해서, 당시 대한제국기 감옥 제도의 변화과정을 인과적, 동태적으로 이해하면서, 당시 개화 정부가 지향하고 있었던 근대화의 노력들과 한계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본고는 『사법품보(司法稟報)』와 『법부기안(法部起案)』 등의 자료들 중에서도 시기적으로는 1890년대의 자료들에만 한정하고, 지역적으로는 개항장 감옥으로서 인천 감리서 감옥과, 각 지역 교정행정의 중심의 하나로서 전라감영(=전주) 감옥에 한정하여 제도상의 문제와 옥살이의 실상을 비교 분석하는데 주력하였다. 또 당대 감옥에 수감되어 수인(囚人) 생활을 직접 체험하고 이에 관한 수기(手記)를 남긴 인사들의 기록도 중요하게 고려하였다. 인천 감옥의 경우에는 구한말의 동학농민군 지도자에서 출발하여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김구(김창수)의 『백범일지』²⁾를 활용할 수 있었으나, 전주 감옥의 경우에는 대한제국기에 해당하는 옥중 체험 수기를 구하지 못하여 아쉬움이 컸다. 한편 1870년대 중반 개항 직후의 기록으로서 대한제국기와는 약 20년 정도 시차가 있지만 서울의 포도청에서 체험한 감옥 생활을 대단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가톨릭 선교사 리델(F. C. Ridel, 李福明, 1830~1884) 주교의 프랑스어로 된 옥중 체험기가 최근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³⁾로 번역 간행됨으로써 대한제국기까지도 그대로 이어진 전통적 감옥의 시설과 교정행정(矯正行政) 및 죄수들의 옥중생활의 분위기를 충분히 음미해볼 수 있었다. 또한 조선후기 이래 대한제국기까지 각 지방의 감영(監營)과 병영(兵營), 수영(水營) 등지에서 중앙에 보고한 『각사등록(各司謄錄)』⁴⁾도 부분적으로 활용하였다. 조선후기 이래 대한제국기까지의 감옥, 교정, 형정 관련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⁵⁾

2) 백범정신선양회 편, 『백범일지』 (하나미디어, 1992)

3) 리델 저, 유소연 역,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살림, 2008)

4) 『각사등록(各司謄錄)』 6권(경기도편,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1982), 『각사등록(各司謄錄)』 54권(전라도보유편2, 국사편찬위원회 발행, 1991)

5) 본고가 다루는 시기 및 주제와 전반적이고 직접적으로 연관된 선행 업적으로, 필자가 구득하여 참고할 수 있었던 글은 다음과 같은 3권의 개설서적 성격을 띤 단행본이었다. 법무부 편, 『韓國矯正史』 (1987) 제4편 조선후기의 근대적 행형(감오경장~광무년간) pp.197-250 ; 權仁鎬 著, 『行刑史』 (국민서관, 1973). 제3편 「韓國行刑史」 중 제3장 「李朝時代」 제6-7절에서 囚禁, 監獄官制, 拘禁施設, 行刑法規 등(pp.388-414) ; 徐壹教 著,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박영사, 1974), 조선왕조 末期의 法典(pp.68-77), 刑法(pp.254-262), 囚禁(pp.334-344), 刑事節次法(pp.433-438) 등. 이 외에 본격적인 연구논문 또는 논문집 형태의 글로서 직접, 간접으로 참고한 것은 沈載祐, 「審理錄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8) 및 이를 다소 보완 수정한 동일인의 두 책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계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네 죄를 고하여라-』 (산치림, 2011) ; 심재우, 「朝鮮後期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규장각』 21(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 趙志晚,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서울대, 2006.8) 및 한국법제연구원 편, 『大典會通 研究 -刑典, 公典編-』 (1996.11) 등의 전문

II. 체옥(滯獄)과 보방(保放), 석방(釋放)

1. 체옥과 옥비(獄費)

조선시대 법전 규정에 의하면 감옥은 죄수들이 오래 머물 곳이 아니었다.⁶⁾ 범죄의 중대성에 비추어 3부류로 나누어진 피의자들이 감옥에 머물며 대기하는 기간은 고작해야 1개월(=30일)이 최대 기간이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수개월, 수년씩, 수십년씩 옥에 갇혀 있는 경우[滯獄, 老獄]도 허다했다.⁷⁾ 대한제국의 성립을 전후한 시기에도 마찬가지였다.

법부(法部) 제9호 훈령의 내용에, “어떤 범죄를 막론하고 여러 해 동안 미결(未決)하여 감옥에 오래 갇혀있는 자와, 실제 범인(實犯人)이 도망쳐서 나타나지 않는 관계로 그 친척이 대신 갇혀있는 자가 있다는 소문이 자주 들린다. 그 의심나는 사안과 다른 사람의 범죄 때문에 수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갇힌 사람들로 하여금 원한을 품게 하고도 끝내 귀결짓지 못했으니, 죄 지은 자를 신중히 심의하는 도리에 어찌 흠결이 없겠는가? 이는 한 차례 특별히 조사하여 결론을 내려야 한다.”⁸⁾

1897년 2월에 강원도 관찰사에게 내려진 법부(法部)의 위 지시 사항에서도 체옥이 당시에 심각한 문제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모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시기 법부는 전라북도 관찰사(全羅北道觀察使)에게도 유사한 지시를 내리고 있다.

법부 제14호 훈령을 받들어, “각군(各郡)의 여러 해 판결하지 못한 죄수[積年未決罪囚] 중에서 살옥(殺獄)에 관계된 경우는 원래의 검안(檢案)을 올려 보내라[上送]”고 전칙(轉飭) 하였습니다. 구례군수(求禮郡守) 이봉상(李鳳相)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본 구례군에 옥수(獄囚) 정범죄인(正犯罪人) 이성여(李成汝)가 감옥에 갇힌 지 지금까지 5년이 되었는데, 초검안(初檢案)과 복검안(覆檢案), 초사안(初査案)은 갑오년(1894년) 비도(匪徒, 동학농민군)

서적은 조선왕조의 기본 법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해설을 해주는 좋은 참고서로 필자의 본고에도 참고한 바가 크다. 본고와 취급 시기와 일치하면서도 본고의 주제인 감옥을 포함하여 형사제도 일반에 관한 보다 전문적이고 본격적인 연구서로서,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의 研究」(서울대 박사논문, 1998.2) 및 정금식 『韓國近代法史攷』(박영사, 2002) 등이 있으며, 본고의 상당한 내용은 이 학위논문과 개설서를 참고하였다. 이밖에 본고의 시기 및 주제와 관련이 되는 논문으로 문준영, 「大韓帝國期 刑法大典의 制定과 改正」, 『법사학연구』 제20호(한국법사학회, 1999) 및 정진숙, 「1896~1905년 형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刑法大典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서울대 국사학과, 2009.6) 등이 있다. 한편 본고의 작성에 간접적 도움이 된 조선후기(개항전)와 일제강점기의 감옥 관련 전문 연구논저로서,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단국대 박사논문, 2001) 및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메카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연세대 박사논문, 1998) 등이 있다. 이밖에도 근대 감옥의 성격규정과 법제사적 의미를 포괄적으로 규정한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박영사, 2006),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까지의 공주감옥에 대한 실증적인 2편의 연구논저는, 윤용혁,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 『웅진문화』 4(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1.6) 및 윤용혁, 「한말의 공주옥에 대하여 -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에 대한 추고-」, 『웅진문화』 5(1992) 등을 참고했다.

6) 『大典會通』 「刑典」 “決獄日限”; 이에 의하면 대(大), 중(中), 소(小)로 범죄를 분류하여 가장 중대한 범죄인 대사(大事, 사형죄인)의 경우에도 감옥에 1개월까지만 대기하도록 되어 있었고, 도형(徒刑)과 유형(流刑) 죄인에 해당되는 중사(中事)의 경우에는 20일, 장형(杖刑)과 태형(笞刑) 죄인에 해당되는 소사(小事)의 경우 10일까지만 죄수(=피의자)를 수감하도록 되어 있다.

7) 심재우, 『네 죄를 고하여라-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산치럼, 2011)

8) 『사법품보』 제1책 p.616, 강원도 관찰사 보고서 제22호(1897.2.19)

가 쫓기했을 때에 잃어버렸기에 다만 복사안(覆査案) 1건만 남아 있습니다. 이에 등서(謄書)하여 보고합니다.”라고 하므로, 이 복사안 1건을 단단히 봉인(封印)하여 올려 보내며 이에 보고 드립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⁹⁾

위 보고서는 1897년 2월 25일 전라북도 관찰사 윤창섭(尹昌燮)이 법무대신 한규설(韓圭堯)에게 올린 제26호 보고서인데, 이를 통해서 전라북도의 경우에도 미결로 인한 체옥이 발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동 관찰사는 이보다 앞선 2월 23일에도 진산군(珍山郡)의 살옥죄인(殺獄罪人) 신상운의 옥사도 미결 체옥되고 있어 해당 군수가 올린 초복검안을 올린다고 법부에 보고했다.¹⁰⁾ 이같은 미결수 체옥에 관한 보고서는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성립된 후 1898년에 들어서면 좀더 체계적으로 보고되기 시작한다.

도내(道內) 각 군옥(郡獄)에 갇힌 죄인(罪人) 등의 녹안(錄案)을 상고하여 살펴보니, 갇혀 있는 지 올해 6년이 된 경우도 있고, 혹 3~4년 된 경우도 있고, 혹 1~2년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아직도 판결을 내리지 않아서 옥에 체류되어 있음이 민망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열거하여 질품(質稟)하니 살펴보시고 지금 곧 판결하여 지령(指令)하시기를 바랍니다.¹¹⁾

위 1898년 5월의 질품서에서 전라북도 관찰사 이완용(李完用)은 당시 법무대신 이유인(李裕寅)에게 그때까지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하의 각군 감옥에 수감되어 대기(체류)하고 있던 구례, 진산, 금산(錦山), 임피(臨陂), 임실(任實), 무주(茂朱), 금구(金溝), 전주(全州) 등 8개 고을 15명의 미결체옥자(未決滯獄者)에 대하여 그 명단을 상세히 보고하고 있다.

미결 수감자에 대한 이같은 일괄적인 전라북도 재판소의 보고는 1899년부터는 미결수 외에도 법무 지령에 따라 판결(선고)된 죄수들과 전라북도 재판소가 자체적으로 판결 선고한 죄수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더욱 포괄적으로 각 군옥별 부류별 수인(囚人)의 명단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보고되고 있다. 전라북도 재판소의 1899년 11월 1일자 보고¹²⁾에 의하면 전주를 비롯하여 무주, 진산, 금산, 임피, 임실, 금구 외에도 김제(金堤), 순창(淳昌), 옥구(沃溝), 고부(古阜), 부안(扶安), 정읍(井邑), 진안(鎭安), 태인(泰仁), 용안(龍安) 등 모두 16개 고을의 군옥(郡獄)에 39명의 수감자가 다음과 같이 보고되고 있다.

<표 1> 1899년 11월 1일 현재 전라북도 각 군별 죄수 현황

고을(郡)	법부지령에 의한 판결자	전라북도재판소 자체 판결자	미결수 (법부에 기보고)	고을별 소계
전주군	6		2	8
김제군	2			2
진산군	1		1	2
순창군	1			1
금구군	3	1		4
옥구군	1			1
고부군	3			3
임실군	1			1

9) 『사법품보』 제1책 p.646, 전라북도 관찰사 보고서 제26호(1897.2.25)

10) 『사법품보』 제1책 p.646, 전라북도 관찰사 보고서 제25호(1897.2.23)

11) 『사법품보』 제3책 p.52, 전라북도 관찰사 질품서 제4호(1898.5.28)

12) 『사법품보』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보고서 제39호(1899.11.1)

고을(郡)	법부지령에 의한 판결자	전라북도재판소 자체 판결자	미결수 (법부에 기보고)	고을별 소계
금산군	3		2	5
임피군	1			1
부안군	1		1	2
무주군	3			3
정읍군	1		1	2
진안군	1		1	2
태인군		1		1
용안군			1	1
16개 군 (소계)	28명	2명	9명	39명

전거 : 『사법품보』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보고서 제39호(1899.11.1)

위 <표1>에 의하면 1899년 11월 전라북도 재판소 관하의 각 군별 미결 체육 보고자는 모두 9명으로, 전년도인 1898년 5월의 15명에 비해 대략 40%가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1899년도 보고자 중에는 이미 1898년 5월에 보고했어야 하지만 누락된 1명(1896년 수감자)이 있으므로, 실제 1898년 미결 체육 보고대상자는 16명이고, 1899년 미결 체육 신보고자는 8명이 된다. 따라서 미결 체육자는 1년만에 절반(=50%)으로 줄어든 셈이 된다. 이는 대한제국 성립을 전후하여 법부가 의지를 갖고 미결 체육자를 적극적으로 줄이고자 한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또 위 표에서 전라북도 관찰부가 위치한 전주군(全州郡)의 죄수가 가장 많음도 알 수 있는데, 이는 중죄인의 경우, 각 고을에서 전주감영(전라북도재판소)으로 직접 이수(移囚)하여 심리하고 법부의 판결이 날 때까지 그냥 대기하거나 또는 이곳에서 징역형을 실시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한편 1898~1899년 2년 동안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미결수(未決囚) 9명만을 따로 분석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1898~1899년 전라북도재판소 관할 각 군별 미결 체육자 현황보고

고을 (군)	1898년 5월 보고	1899년 11월 보고	비고(**미결수 해소)
전주군	피고 김조이-1898.윤3.10수감 죄인 이경장-위 김조이 남편 (*이상 강제륙 복비치사 피고 2개월 체육*)	정범 강덕윤-1896.9.25수감 (*상해치사, 3년2개월 체육) 정범 임광열-1899.4.13수감 (*살인, 약7개월 체육)	1898년 2명 해소 1899년 2명 신규
구례군	정범 이성여-1893.10수감 (*동존위, 타살사주죄, 4년7개월 체육)		1898년 1명 해소
진산군	정범 신상운-1895.4수감, 1897.11.29보고(*치사죄, 3년1개월 체육)	정범 한여삼-1899.1.6수감 (*구타치사죄, 법부기보고, 약 7개월 체육)	1898년 1명 해소 1899년 1명 신규
금산군	정범 김팔성-1896.7.21수감, (*구타치사죄, 1897.1.19보고, 1년10개월 체육) 정범 이월복-1897.8.28.수감, 폭행치사죄, 1897.9.30보고, 약9개월 체육)	황판달-1896.10.3수감 (*작당도적죄, 법부 사형판결 전1899.10.옥사/병사, <u>3년체육 으로 병사</u>) 이정춘-1899.6.11수감(*치사 죄, 법부 곧 조사, 3개월체육)	1898년 2명 해소 1899년 2명 신규 (*그중 1명 옥사/병사)
임피군	정범 정운집-1896.9.8수감		1898년 1명 해소

	(*폭행치사죄, 1897.1.19보고, 1년 8개월 체옥)		
임실군	정범 박영재-1897.2.4수감 (*상해치사죄, 1897.3.15보고, 1년 3개월 체옥)		1898년 1명 해소
무주군	정범 김조이-1897.8.18수감 남편 복수차 척살죄, 간범 이병련, 간범 이성련, 간범 박득용, 1897.9.30보고 (*9개월 체옥)		1898년 4명 해소
금구군	정범 김창서-1897.12.8수감 (*폭행치사죄, 1897.12.31보고, 5개월간 체옥) 간련 조선량, 간련 정재화		1898년 3명 해소
부안군		정범 오재영-1899.9.2수감 (*폭행치사죄, *2개월 체옥)	1899년 1명 신규
정읍군		최영두-1899.6.5수감, 정읍고부 비도(匪徒, 동학?) 수창죄, 사형 전에 1899.10.13옥사/병사, *5개월 체옥후 병사)	1899년 1명 신규(*병사/옥사)
진안군		정범 홍덕수-1898.10.20수감 살인죄, *1년 1개월 체옥)	1898년 1명 신규
용안군		피고 김윤식-1898.9.29수감 강간 자액치사죄, *1년 2개월 체옥)	1898년 1명 신규
12군 소계	총 15명 - 연도별 수감자 1893년(1), 1895년(1), 1896년(2), 1897(9), 1898년(2)	총 9명 - 연도별 수감자 1896년(1), 1898년(2), 1899년(6)	

상기 표의 일자는 음력이며, 체옥기간은 편의상 수감된 날로부터 미결수 최종 보고일자까지로 함.
 전거 : 『사법품보』 제3책 p.52, 전라북도 관찰사 질품서 제4호(1898.5.28), 『사법품보』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판사 보고서 제39호(1899.11.1)

위 <표2>를 통해서 보면, 1898~1899년 전라북도재판소의 보고에 나타난 전라북도내 각 군별 군옥(郡獄)의 미결 체옥자들 중에는 약 4년 7개월간 체옥한 사람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1898년 5월에 일제 보고된 15명의 미결 체옥자는 1899년 11월 보고 때까지 모두 판결이 나서 미결상태가 해소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미결자에게 관련된 범죄 혐의를 보면 대부분 살육(殺獄) 사건임을 알 수 있고, 정범(正犯)이나 피고(被告) 등으로 표시된 범죄 주동자들이 많지만, 이들과 함께 관련된 간범(干犯)이나 간련(干連) 등도 더러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간범이나 간련의 경우는 1898년도 보고에는 나타나지만 이듬해인 1899년 보고에는 미결 체옥자 명단에 보고되지 않는 것을 보아서 1899년을 기점으로 미결자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결자의 수는 전주군과 금산군이 가장 많은데, 각각 1898년과 1899년에 2명씩 계속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중에서 전주군 군옥은 앞서 수감자수에 있어서도 8명으로 다른 군옥에 비해 월등히 숫자가 많았는데, 이와 함께 살육과 같은 강력사건으로 인한 미결자도 계속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

인천 감리서 감옥의 경우는 1896년부터 미결자에 대한 보고가 드러나고 미결자 해소도 빨리 이루어져, 1897년 이후부터는 매우 소수의 미결자만 기록에 보인다.

... 상년(=1895년) 4월 이후는 폐지된 전 (인천) 관찰부에 관계된 사안으로, 여러 해 동안 쌓인 것을 모두 나열하자면 너무 장황하게 될 것 같으므로, 본 감리(監理)가 부임한 이후로 법무에서 받은 훈령과 지령들만을 다음과 같이 나열합니다.

본부(=법부) 제2호 지령 내에, “전 관찰부 때, 이미 판결된 죄수는 그 예전 숫자대로 모두 징역(懲役)에 나가게 하며 미결수 6명은 한성재판소로 압송(이송)할 것”(1896년 8월 27일 지령 발행, 동월 29일 도착)¹³⁾

인천은 1883년 개항하여 1895년 3월 인천항 재판소가 설치되었고, 동년 8월 인천항 경무서(警務署)가 설치되었다. 경무서는 감리(監理)의 지휘를 받는 경무관(警務官)이 소속 직원들을 감독하였는데, 감옥 사무도 경무관의 관할에 속했다. 인천 감리는 1895년 5월 1일부터 1896년 8월 7일까지 일시 폐지되어 인천부 관찰사가 그 업무를 대신해오다가 1896년 8월 다시 감리서가 복설되어 예전의 업무를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위 인용문에서 1895년 5월부터 1896년 8월까지 인천관찰부 때 생긴 미결수 6명이 있었고, 법무에서는 이들을 모두 한성재판소(漢城裁判所)로 이송하라고 요구하였는데, 시급히 판결을 내리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위에 인용한 1896년 8월의 법무 지령 제2호가 어떤 연유인지는 알 수 없으나 즉시 실시되지는 않은 듯하다.

본월(1896년 12월) 16일에 본항(=인천항) 재판소에 이결(已決, 既決)했거나 미결(未決)한 각범죄인(各犯罪人) 등을 일일이 다음에 나열하여 옥안(獄案, 囚徒案)에 오른 죄인을 모두 보고합니다. 그 죄인 중에서 18명은 형기(刑期, 징역형의 기한)가 아직 차지 않아서 현재 징역살이 중이고, 김창수(金昌洙, 김구), 이창익(李昌益), 한상근(韓相根) 등 9명은 각각 범죄한 바가 중대하여 갖추어 보고했지만 법무에서 처리여부를 지령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감옥에 수감되어 있는데, 옥비(獄費, 감옥 운영비)가 넉넉하지 못하여 해당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내용으로 경무관 김순근(金順根)의 보고가 잇따라 도착하므로 대단히 답답하고 민망합니다. 이에 보고하니, 잘 헤아리셔서 이미 보고했으나 아직 판결하지 않은 김창수 등 9명에 대해 신속히 처결(處決)해주시고 지령해주시기를 바랍니다.¹⁴⁾

이러한 요청은 1897년 2월에도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다가 1900년 3월 초에 이르러 미결수가 1명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 전주와 마찬가지로 1898~1899년간 미결수에 대한 신속 판결이 대대적으로 이루어졌을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이같이 미결수에 대한 대대적인 판결 작업이 불과 1~2년 사이에 급격히 이루어진 데에는 장기간 체류하는 미결수들에게 지급할 감옥 운영비가 매우 부족했기 때문이었다.

이번 달 27일 질품한 것에 대한 지령을 접수해보니, ... 미결수 6명에 대한 정책과 공초(供招)를 작성하여 모두 한성재판소로 압송해 넘기고 징역죄인 20명은 예전대로 적용하여 머물러 징역살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있는 징역죄인의 식비가 1명당 하루에 6전이 드는데 20명만 해도 매달 36원(元)이고 미결(未決) 절도 죄수 및 장래 잡범(雜犯)으로 징역

13) 『사법품보』 제1책 p.458, 인천항 감리 보고서 제6호(1896.11.3) 「左開」

14) 『사법품보』 제1책 p.539,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13호(1896.12.29)

에 해당하는 죄수가 반드시 없다고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인천항의 경무예산 감옥경비[警務豫算獄費] 10원으로는 부족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러하니 이 조항의 식비를 별도로 구획하는 방법을 계획한 후에야 본 인천항 재판소가 약간이나마 모양새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¹⁵⁾

1896년 8월 인천항 감리서가 복설되었을 무렵 감옥 운영비가 부족하다고 호소하는 내용인데, 이러한 감옥 운영비 부족 문제는 앞서 살펴본 동년 12월 29일자로 인천항재판소 판사 이재정이 범부대신 조병식에게 올린 보고서 제13호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었다. 또한 운영 경비의 부족과 함께 감리서 감옥이 대단히 협소하였고, 전염병마져 돌게 되자 당국에서는 감옥 내 죄수들을 대거 보방 내지 석방하는 대책을 세우지 않을 수 없었다. 이것은 전주 감옥 등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의 군옥들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

2. 체옥의 개선 - 보방과 석방

1897년 2월, 인천항 경무서 감옥에 전염병이 창궐하여 그곳에 수감된 죄수들 뿐아니라 죄수들을 관리 감독하는 감옥 직원들도 전염병에 걸려 고생했다.

본 인천항 경무관(警務官) 김순근(金順根)의 보고서를 접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에, “본 경무서(警務署)의 죄수가 현재 26명인데 그 중 이창익(李昌益), 나춘국(羅春局)은 그 죄안(罪案)이 처벌되었다고 관보(官報)에 게재되었으나, 직접 훈령을 받지 못해 아직까지 단단히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그 외의 징역죄인 14명, 아직 판결하지 않은 죄인 이창수(李昌洙), 잡범죄인 9명 등은 감옥 건물이 비좁아서 감당하기 어렵던 중에, 금년 1월 이후로 또 전염병이 발생하여, 도적놈 최성국(崔聖局)이 이미 죽어서 전보(轉報)하였습니다. 그 병이 전염하여 바야흐로 지금 병으로 앓고 있는 자가 11명이며, 감옥의 순검(巡檢)과 압녀(狎牢), 청사(廳使) 등이 또한 병에 걸려 신음하는 자가 7인입니다. 현재 일의 형세가 대단히 근심스럽고 절박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조사했더니 죄수들이 질병에 걸린 상태와 순검(巡檢), 압녀(狎牢) 등이 겪은 고통이 매우 근심스럽습니다. 잡범죄인(雜犯罪人) 중 가볍게 처벌할 만한 자를 우선 보방(保放)하도록 하여 질병이 잦아들게 하는 게 저의 관견으로는 좋을 듯합니다.¹⁶⁾

이처럼 감옥 내에 전염병이 돌 때는 물론이거니와 평상시에도 감옥 내의 열악한 환경 때문에 병사(病死)하는 자가 속속 나왔다. 1896년 10월 29일, 징역살던 엄윤근이 옥에서 병사했고¹⁷⁾, 그 다음달인 11월 18일 징역죄인 오만달이 병사했으며¹⁸⁾, 1899년 12월 28일 김한기가 병사했다.¹⁹⁾ 따라서 이러한 감옥 내의 열악한 환경을 고려할 때 보방과 석방은 운영비도 절감하면서 감옥 관리들에게도 편리하고 매우 효과적인 운영방법이었다. 감옥 내의 열악한 환경은 전라북도 지역의 군옥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1896년 금산군 옥에서 도적 김경준이²⁰⁾, 1899년 10월 금산군 옥에서 도적 황판달과 같은 때 정읍군 옥에서 동학

15) 『사법품보』 제1책 p.372, 인항재판소 질품서 제1호(1896.8.31)

16) 『사법품보』 제1책 p.612, 인천항감리 보고서 제13호(1897.2.12)

17) 『사법품보』 제1책 p.447,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5호(1896.10.30)

18) 『사법품보』 제1책 p.487,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10호(1896.11.19)

19) 『사법품보』 제5책 p.90,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25호(1899.12.31)

교도 최영두가 각각 사형 집행을 앞두고 각각 해당 군옥에서 병사했다.²¹⁾ 그러나 이같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전주 감옥에서는 전라북도 재판소를 통하여 법무대신에게 실제로 보방을 건의한 내용은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인천 감리서의 경우 1897년 초 감옥 내에 전염병이 돌았으나, 전주 감옥의 경우 1896~1900년 사이에는 전염병 기사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보아 보방의 현실적 필요성이 작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보방은 주로 경죄수(輕罪囚)가 병에 걸렸을 때 치료를 위해, 또 사형죄를 제외하고 죄수가 부모상을 당했을 때에 보수(保授, 보증인)를 정해놓고 일시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게 했다가 병을 치료하거나 부모상을 마친 후에 다시 감옥으로 환수하는 제도였다.²²⁾ 이에 비해 대한제국기 정부에서는 황제의 이름으로 사면령을 발하여 전국적으로 서울과 지방의 모든 감옥에 체류된 죄수들을 한꺼번에 대규모로 석방시키거나 최소한 감등시켜 주고자 노력했다.

황제의 조칙(詔勅)에 이르기를, “지금 드물게 찾아오는 경사(慶事)를 맞이하여, 마땅히 대규모 사면(赦免)의 은전(恩典)을 베풀고자 한다. 모반(謀反), 살인(殺人), 절도(竊盜), 강도(強盜), 통간(通姦), 편재(騙財) 등 6가지 범죄를 제외하고, 여러 죄인들 중에서 감등(減等)할만한 자는 감등(減等)하고, 석방[放送]할 만한 자는 석방하라. 비록 6범 중에서도 혹 정황이나 자취가 가히 의심스러운 경우 재판소로 하여금 일제히 심리(審理)하여 감등(減等)해주어라. 미결수(未決囚)로서 판결을 대기하는 자들에게도 이에 다라 거행하고, 유배죄인(流配罪人) 또한 심판하여 감등함으로써 조정[朝家]에서 경사로운 일에 동참하게 하려는 뜻을 보여주라.” 하셨다.²³⁾

이러한 고종 황제의 사면령은 1897년부터 190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 여러 차례 내려졌다. 전주 경무서에서 소란을 피운 혐의로 15년씩 징역형(懲役刑)을 선고받고 전주 감옥에서 복역하던 김창환(金昌桓), 김흥갑(金興甲), 송덕흥(宋德興), 이기섭(李基燮) 등도 1900년 1월 사면령 덕택에 방송(=석방)되었다.²⁴⁾ 이들은 1898년 9월부터 복역하여 1900년 1월까지 약 1년 4개월간 복역한 후 특별 석방의 혜택을 입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경무서에서 소란을 피운 자들 중에서 주동으로 지목되어 종신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최재열(崔在烈)도 1898년 10월 4일부터 전주 감옥에서 징역살이를 시작하여, 무려 4번의 감등(減等)을 거쳐 1899년 11월에는 징역 5년으로 감형되었다.²⁵⁾ 그런데 같은 시기 전라북도 재판소 관할 내의 다른 많은 군옥에 갇힌 죄수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경축 특사의 혜택을 받은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는데, 그 이유는 알려져 있지 않다. 또 인천 감옥서의 경우에도 이런 특사를 받아 특별히 석방된 사례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²⁶⁾

20) 『사법품보』 제1책 p.482, 전라북도관찰사 질품서 제8호(1896.11.8)

21) 『사법품보』 제4책 p.76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39호(1899.11.1)

22) 원재연, 「1890년대 호남지역 감옥의 운영실태 일단(一端)-장성군 수인(囚人) 사망사례를 중심으로-」 『조선시대사학보』 제78집(조선시대사학회, 2016.9) pp.303-308

23) 『사법품보』 제4책 p.50,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9호(1899.4.8)

24) 『사법품보』 제5책 p.268,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5호(1900.1.29)

25) 『사법품보』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39호(1899.11.1)

26) 『사법품보』 제5책 p.26,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22호(1899.11.24) 및 같은 책 p.91,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27호(1899.12.31), 같은 책 p.349, 인천항재판소 보고서 제7호(1900.3.3) ; 이에 의하면 고종의 조칙에 따른 특사 대상자로 인천항재판소에서 추천한 이는 남쇠돌(南釧玆, 징역7년), 유경찬(劉景贊, 미결자) 등인데 이들의 경우 특별히 석방되었다는 기사는 없다.

Ⅲ. 탈옥(脫獄)과 기강 확립

1. 감옥 관리의 부실과 탈옥

전주 감옥과 인천 감옥은 각각 1898년과 1896년에 탈옥사건이 한 차례씩 일어났다. 전주 감옥의 경우는 1900년까지도 탈옥자 2명이 체포되지 않았으며, 인천 감옥의 경우는 5명의 탈옥자 중에서 1900년까지 1명이 도로 체포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탈옥은 기본적으로는 감옥 관리를 철저히 못한 옥쇄장이나 순교 등에게 책임이 있겠지만, 부실한 감옥의 노후한 시설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도 한데, 전주 감옥과 인천 감옥의 경우는 다르다. 우선 전주 감옥의 경우는 전형적인 관리 소홀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본부(=전주 관찰부)에 수감 중이던 종신징역(終身懲役) 죄인 고부(古阜) 출신 천경화(千京化)와 임피(臨陂) 출신 정운집(鄭云集)이 올해(=1898년) 8월에 진위대(鎭衛隊) 병정 최재열(崔在烈) 등이 경무서(警務署)에서 소동을 일으킬 때, 그 분분한 틈에 순검(巡檢), 압죄(押牢)가 당황하여 흩어진 것을 보고는 마음대로 도주하였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거둬 타이르고 여러 가지로 추적하며 수색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여러 달에도 아직 잡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지금 또 해당 2군(=고부군, 임피군)에 훈령을 발하여 철저히 기찰하고 살피게 하였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²⁷⁾

전주 감옥에서 천경화, 정운집 등 2명의 종신징역형 죄수가 달아난 1898년 8월에는 1895년 4월에 설립된 경무청관제(警務廳官制)로 인하여, 전라북도의 관찰사가 주재하던 전주에도 경무서(警務署)가 설립되어 있었고, 그 책임자 경무관(警務官)과 부관인 총순(總巡)이 배치되어 있었다. 당시 감옥은 경무관의 통솔하에 있었고, 경무관은 전라북도 관찰사 겸 전라북도 재판소 판사의 지휘 하에 활동하고 있었다. 따라서 재판소, 경무서, 감옥(감영의 옥)은 서로 밀접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유기적 상관관계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감옥 운영의 관리체제 하에서 감옥을 지키고 운영하는 경무서 내부가 진위대 병정들에 의해서 소란스러워지자, 순교, 사령 등이 흩어져 은신하는 바람에 앞서 언급한 천경화, 정운집 등이 도주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이후 전주 감옥에서는 여러 차례 이들 탈옥범(脫獄犯)들을 체포하고자 추적하고 수색했으나 적어도 1900년까지는 체포하지 못했음이 드러난다.²⁸⁾

한편 인천 감리서 감옥의 경우는 전주와는 달리, 감옥 관리들의 근무태만도 문제였지만, 그보다는 탈옥 죄수들의 주도면밀한 계획에 의해서 옥의 시설 일부를 허물고 달아난 경우에 속한다. 또한 탈옥을 모의한 인물 중에서 결출한 주동자가 있어서 그를 중심으로 행동을 일사분란하게 함으로써 관리들의 감시망을 벗어날 수 있었던 점도 특이하다고 할 수 있다.

어제 낮12시 경에 본 인천항의 경무관 유한익(劉漢翼)의 보고서를 받아보니, 그 내용에 “오늘 상오 1점중(=새벽1시)에 당직을 선 권임순검(權任巡檢) 진정진(秦貞鎭), 임재호(任在鎬), 감옥간수순검(監獄看守巡檢) 오기환(吳基煥), 황세영(黃世永) 등이 보고하기를, ‘수감되어 있던 징역죄인(懲役罪人) 조덕근(曹德根), 양봉구(梁鳳九), 황순용(黃順用), 강백석(姜伯

27) 『사법품보』 제3책 p.747,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4호(1898.11.30)

28) 『사법품보』 제3책 p.747,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4호(1898.11.30), 동 제4책 pp.760-76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39호(1899.11.1), 동 제5책 pp.130-132,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2호(1900.1.3)

石)과 일본인을 칼로 찔러 죽이고 아직 판결을 받지 못한 김창수(金昌洙)가 옥에 구멍을 뚫고 담을 넘어서 모두 달아났습니다.’ 하므로, 즉시 순검과 더불어 인천항의 방곡(坊曲)과 선박에까지 일일이 살피고 검토했지만 드러난 아무런 종적(踪跡)이 없으므로 순검들을 나누어 바다와 육지로 파견하여 기어코 살피서 잡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당직 권임순검 진정진, 임재호, 감옥간수순검 오기환, 황세영과 감옥압죄(監獄押罪) 김춘화(金春化)를 한꺼번에 모두 잡아 가두고 기어코 탈주자들을 붙잡아오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선은 드러난 흔적이 없어서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이에 보고하니 헤아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감옥서(監獄署)에 굳게 가둔 죄인을 여러 명 잃어버린 것[失捕]은 듣기에 매우 놀랍고 또한 해당 탈주범들이 모두 6범(六犯, 6가지 중대범죄)에 관계됩니다. 그중에서 김창수는 공술한 바가 비중이 크고 외국과 관계된 사건인데 아직까지 재결하지 않으셨습니다.[未決囚] 해당 경무관 유한익에게 특별히 엄중하게 지시하여 “일체히 아울러 조사하여 잡아들이도록 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감옥서장(監獄署長)과 당직순검(當直巡檢) 등에게 마땅히 꾸짖고 경고하는 것은 본 재판소 판사가 처단하기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에 보고하니 살펴보시고 적절히 헤아려 지령(指令)하시기를 바랍니다.²⁹⁾

당시 인천항감리 겸 재판소 판사 서상교(徐相喬)가 김창수 등 5명의 탈옥자들의 행적과 사건 경과에 대해 법무대신 이유인(李裕仁)에게 올린 보고서이다. 이상의 재판소 판사의 보고에 잘 나타나지 않는 탈옥 주동자 김창수 즉 김구(金九, 1876~1949, 호 白凡)의 자서전에는 그가 주동이 되어 다음과 같은 치밀한 준비를 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는 아버님께 면회를 청하여 한 자 길이 되는 세모난 쇠창 하나를 들여줍사고 여쭙었더니, 아버님께서는 얼른 알아차리시고 그날 저녁에 새 옷 한 벌에 그 쇠창을 싸서 들여주셨다. 이제 준비는 끝나고 마지막으로 탈옥할 날을 무술년 3월 9일로 정했다. 이날 나는 당번하는 옥사정 김가에게 돈 150냥을 주어, 오늘 밤에 내가 죄수들에게 한턱을 낼 터이니, 쌀과 고기와 모주 한 통을 사달라 청하고, 따로 돈 25냥을 옥사정에게 주어 그것으로는 아편을 사먹으라고 하였다. 이 옥사정이 아편장이인 줄을 내가 미리 알았기 때문이다. ... 50명의 징역수와 30명의 미결수들은 주렸던 창자에 고깃국과 모주를 실컷 먹고 취흥이 도도하였다. 옥사정 김가더러 이방 저방 돌아다니며 죄수들 소리나 시키고 놀자고 내가 청하였더니, 그는 좋아라고 “이놈들아, 김 서방님 들으시게 장기대로 소리들이나 해라.”하고 생색을 내고 저는 소리보다 좋은 아편을 피우려고 제 방에 들어가 박혔다. 나는 적수(도적) 방에서 잡수(잡범) 방으로, 다시 잡범 방에서 도적 방으로 왔다 갔다 하다가 슬쩍 마루 밑으로 들어가서 바닥에 간 박석(정방형으로 구운 옛날 벽돌)을 창끝으로 들쳐내고 땅을 파서 옥 밖으로 나왔다. 그리고 옥담을 넘어 줄사다리를 메어놓고 나니 문득 딴 생각이 났다. ... 나는 눈짓으로 조덕근의 무리를 하나씩 불러서 나가는 길을 알려주어 다 내어 보내고 다섯 번째로 나가보니, 먼저 나온 네 녀석들이 담을 넘을 엄두도 못내고 밑에 소복하게 모여 앉아서 별별 떨고들 있었다. 나는 하나씩 궁둥이를 떠받쳐서 담을 넘겨 보내고 ... 나는 죄수들이 물통을 마주 메는 한 길이나 되는 막대기를 짊고 몸을 솟구쳐서 담 꼭대기에 손을 걸고 담넘어 저편으로 넘어 뛰었다. 이렇게 된 이상에는 내 길을 막는 자가 있으면 사생결단을 하고 결투할 결심으로, 판장을 넘지 아니하고 내 쇠창을 손에 잡고 바로 삼문(三門)으로 나갔다. 삼문을 지키던 파수 순검들은 비상소집에 들어간 모양이어서 거기는 아무도 없었다. 나는 탄탄대로로 나왔다. 이곳에 들어온지 2년 만에 인천감옥을 나온 것이었다.³⁰⁾

29) 『사범품보』 제2책 p. , 전라북도재판소 보고서 제3호(1898.3.21),

30) 백범정신선양회 엮음, 『백범일지 -민족의 영원한 지도자 백범 김구 선생 자서전-』 (하나미디어,

김구의 회고에 의하면 인천 감리서 감옥은 경무서 및 재판소와 매우 근접해 있었고, 밤마다 옥수들이 도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잠을 자지 못하게 하고 노래를 부르게 하도록 했다고 한다. 위 설명을 통해 보면, 김구가 1차로 탈옥한 곳은 도적방, 잡범방 등으로 나누어진 감방의 바닥을 파서 옥마당으로 나왔고, 이어서 등근 담장으로 둘러싸인 옥담을 뛰어 넘어서 옥을 둘러싼 인천관찰부(감영, 재판소) 정문으로 걸어나왔음을 알 수 있다. 전주의 감옥은 어떻게 생겼을까? 이와 관련된 자세한 설명을 해주는 기록을 발견할 수 없지만, 일단은 기결수와 미결수가 나누어져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려면 최소한 2칸 이상의 감방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이고 공주감영 옥과 마찬가지로 등근 담장이 옥사를 두르고 있었다. 또 등근 옥담 밖에는 순교들과 형리들의 근무처(숙직소)가 위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옥리(獄吏)의 기강 확립(紀綱確立)과 탈옥자 체포

인천감리서 관리들은 여러 차례 김구 일행을 찾았는데, 탈옥자 5명 중에 한 명이었던 조덕근을 먼저 잡아서 다시 감옥에 가두었다.

상월(=8월) 20일에 실패했던 죄인 조덕근, 양봉구, 황순용, 강백석, 김창수 5명 중에 조덕근을 먼저 잡아왔기에 이에 보고합니다. ... 간수순검 오기환, 황세영과 압뢰 김춘화 등은 사형죄수를 놓쳐버리고, 기한이 지나도록 탈주범들을 잡지 못하였으니, 법의 뜻을 헤아려보면 모두 통탄할 일입니다. 해당 범인 김춘화는 『대명률(大明律)』 「포망편(捕亡編)」 “주수불각실수조(主守不覺失囚條)”의 “무릇 옥졸(獄卒)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죄수를 놓쳐 버리면 죄수[囚人]의 죄에서 2등급을 감하고, 만약 죄수가 옥안에서 옥을 부수고 도망간 경우에는 또 2등급을 감한다”는 율문에 비추어 태(答)80, 징역 2년에 처할 만한데, 이미 죽었으므로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순검 오기환, 황세영 등은 같은 율, 같은 편, 같은 조항의 사옥관(司獄官)과 사옥전(司獄典)은 옥졸의 죄에서 3등급을 감한다는 율문에 비추어 태100에 처하고 석방했으며, 조덕근은 같은 른, 같은 편, “도류인(徒流人)이 역한(役限, 징역기한) 내에 도망치는 자는 1일 태50, 매3일에 1등급을 더하여, 죄가 장(杖) 100에 이르면 곧바로 배소(配所, 유배장소)로 데려가서 다시 처음부터 징역살이를 시작하되, 이미 징역을 산 날자는 계산하지 않는다”는 율문에 입각하여 “태100에 처하고 다시 징역을 살게 하되, 이미 지나온 징역기간은 계산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날자를 계산하여 징역 10년을 살게 한다”라고 해야 할 일로 훈령하니, 이것에 의지하여 시행할 것입니다. ... 해당 간수순검 오기환, 황세영은 법률에 따라서 각각 태100에 처하여 석방하고 해당 범인 조덕근은 태100을 치고 그대로 징역 10년을 살게 하였으므로 이에 보고합니다. 살펴 해야리시길 바랍니다.³¹⁾

인천 감옥의 관리를 소홀히 한 죄로, 김구 일행 5명을 놓쳤을 때의 압뢰, 간수순검들이 모두 태 80에서 100대까지 맞았다. 전주의 경우 탈옥자를 놓친 때의 압뢰나 순검 등이 모두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다. 그러나 인천의 경우와 유사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1992.4).

31) 『사법품보』 제1책 p.372, 인천향재판소 질품서 제1호(1896.8.31).

IV. 맺음말

대한제국기 전주와 인천은 각각 전라북도 지역의 감영(관찰사 주재지)과 수도권의 개항장으로 특징지어진다. 따라서 이곳의 감옥들도 각각 전라북도 관찰부 또는 전라북도 재판소의 규모에 맞는 감옥, 감리서가 설치된 개항장의 감옥이라고 할 수 있다. 전주 감옥은 전라북도 지역에서도 가장 수감된 죄수도 많고 미결수도 많은 곳이었다. 전주를 비롯한 전라북도 지역의 군옥들은 최장 5년 가까이 감옥에 정채되었던 미결수가 있는 곳이 많은데, 1898~1899년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판결행위로 적어도 수년씩 정채된 미결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인천 감리서 감옥의 미결수도 전주 감옥보다 많은 9명의 미결수가 있었으나 1900년대 무렵에 가면 1명으로 줄어든다. 이처럼 미결수의 급격한 축소는 감옥의 운영비용, 특히 죄수의 식비를 줄이기 위한 교육지책이기도 했다. 한편 전주의 감옥은 전북 지방의 각 군옥과, 인천의 감옥은 서울의 감옥이나 황해도의 감옥 등과 각각 죄수를 상호 이송(이감)시키는 일도 하고 있었다. 그 의미에 대해서는 향후 고찰해야 할 연구과제로 남겨야 하겠지만 그 목적 중에는 감옥 운영의 비용을 절감하려는 재정적 목적이 분명히 깔려 있었다. 미결수의 축소는 곧바로 비정상적으로 장기간 옥에 머물게 되는 체옥 현상을 상당수 감소시켜 주었다. 한편 어느 특정한 감옥의 체옥 현상은 전주 감옥과 전라도 각지 군옥들이 서로 죄수를 이송(이감)시키거나 인천 감리서 감옥에서 한성재판소 감옥이나 인근 경기도, 황해도 각군의 군옥으로 죄수를 이동시키는 등의 현상을 통해서도 부분적으로 해소될 수 있다. 이와 함께 감옥에 수감된 죄수의 병을 치료하거나 친상을 치르게 하거나 흉년과 가뭄에 일시 먹을 것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보수(=보증인)를 정해놓고 감옥 밖으로 나가서 건강을 회복하거나 친상을 치르는 등의 일을 마치고 다시 감옥으로 돌아오는 보방(保放) 및 국가의 경축을 맞아서 대규모 사면령을 실시하면서 석방되거나 징역형의 감경 혜택을 받는 것도 체옥을 해소시키는 좋은 방안이었다. 앞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전주 감옥에서는 1900년 전후 집단 사면령이 있었고, 인천 개항장 감옥에서는 1897년 초반을 전후한 무렵 전염병이 돌면서 수많은 죄수들이 병에 감염이 되어, 이를 치료하기 위해 상당수의 죄수에 대한 보방이 실시되기도 했다. 전주 감옥과 인천 감옥에는 각각 1898년, 1896년에 한 차례씩 탈옥사건이 발생했다. 전주의 경우는 관리들의 감독소홀이 그 주된 원인이었으나, 인천의 경우에는 관리감독 소홀과 함께 탈옥 인물들의 주도면밀함과 감옥시설의 부분적 파괴가 그 특징으로 드러난다. 훗날 개명하기 전에는 김창수로 불리던 김구가 인천 감리서 감방 내부에서 바닥 시설을 훼손하면서까지 탈출한 사건을 통해서, 그 자신이 직접 감옥의 구조나 감옥에서의 수형생활 일반에 대한 다양한 관심을 상세히 기록했다. 전주 감옥이 탈옥자를 체포하지 못한 데 비해 인천감옥은 탈옥자들을 하나씩 차례로 잡아들였다. 이는 사법품보에 잘 드러나지 않지만, 김구의 자서전에는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참고문헌>

- 『大明律附例』
『大典會通』
『六典條例』
『新舊刑事法規大典』 上, 下
『司法稟報』 영인본 제1~5권
『법부기안(法部起案)』 영인본 제1~5권
『各司謄錄』 영인본 제6권(경기도편6), 제54권(전라도보유편2)
한국법제연구원 편, 『大典會通 研究 - 刑典, 公典編-』 (1996.11)
- 權仁鎬 著, 『行刑史』 (국민서관, 1973)
都冕會, 「1894~1905年間 刑事裁判制度의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1998.2)
리델 저, 유소연 옮김, 『나의 서울 감옥 생활 1878 - 프랑스 선교사 리델의 19세기 조선 체험기-』 (살림, 2008)
문준영, 「大韓帝國期 刑法大典의 制定과 改正」 『법사학연구』 제20호(한국법사학회, 1999)
백범정신선양회 편, 『백범일지』 (하나미디어, 1992)
법무부 편, 『韓國矯正史』 (1987)
徐壹敎 著, 『朝鮮王朝 刑事制度의 研究』 (박영사, 1974)
沈載祐, 「朝鮮後期 牧民書의 편찬과 守令의 刑政運營」 『규장각』 21(서울대학교 규장각, 1998)
_____, 「審理錄 研究」 (서울대 박사논문, 2005.8)
_____, 『조선후기 국가권력과 범죄통제 -심리록 연구-』 (태학사, 2009)
_____, 『법률과 형벌로 읽는 조선 -네 죄를 고하여라-』 (산치림, 2011)
원재연, 「남한산성의 형옥과 천주교 신자들의 옥살이」 『교회사학』 창간호(수원교회사연구소, 2004.12)
_____, 「조선시대 保放의 典據와 그 實態」 『법사학연구』 제33호(2006.4)
_____, 「서양법의 등장과 구한말 유가 법사상의 변용」 『韓國儒學思想大系』 VIII 法思想編 (한국국학진흥원, 2008.12)
_____, 「수원 화성의 천주교사적지 재조명 -형옥(刑獄)을 중심으로-」 『수원학연구』 제7호(수원문화원부설 수원학연구소, 2010.12)
유영익 편저, 「이승만의 “옥중잡기” 백미(白眉)」 『젊은날의 이승만』 (연세대출판부, 2002)
윤용혁,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 『웅진문화』 2(공주향토문화연구회, 1991.6)
_____, 「한말의 공주옥에 대하여 - “충청감영시대의 공주감옥”에 대한 추고-」 『웅진문화』 5 (1992)
이민원 편저, 「백범 김구의 세계관의 변화와 단발 문제 - 백범일지를 중심으로 -」 『백범과 민족운동연구』 제5집(백범학술원, 2007.6)
이종민, 「식민지하 근대감옥을 통한 메카니즘 연구-일본의 형사처벌 체계와의 비교-」 (연세대 박사논문, 1998)
_____, 「일제의 囚人 노동력 운영 실태와 통제 전략 -전시체제를 중심으로-」 『한국학

보』 98(일지사, 2000)

이한우 편저, 『이승만-대한민국을 새운 독립운동가-』 (역사공간, 2010.12)

임재표, 「조선시대 인본주의 형사제도에 관한 연구-圓形獄과 恤刑을 중심으로-」 (단국대 박사논문, 2001)

정공식, 『韓國近代法史攷』 (박영사, 2002)

정진숙, 「1896~1905년 형법체계정비에 관한 연구-刑法大典 제정을 위한 기초작업을 중심으로-」 『韓國史論』 55(서울대 국사학과, 2009.6)

趙志晚, 「朝鮮時代 刑事法으로서의 大明律과 國典」 (2006.8, 서울대)

한인섭,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참고자료> 1872년 전국군현지도 중 전주부지도



전주성의 동북쪽 안쪽 귀퉁이에 둥근 담장을 둘러싼 감옥이 보인다.

_____, 『형벌과 사회통제』 (박영사, 2006)

<토론문>

「대한제국기 지방 감옥의 관리 실태」를 읽고

이선아(전북대학교)

본 논문은 갑오-을미개혁 이후 ‘징역형’이라는 근대적 ‘형벌’을 도입하면서 야기된 감옥 관리에 대해 인천과 전주의 감옥을 중심으로 검토한 논문입니다. 조선시대에는 신체형 - 태형, 낙인, 차꼬 및 칼 등이 사용되는 형벌이 시행되었는데, 신체의 자유를 억압하는 자유형의 일환으로 징역형이 도입되면서 감옥에 갇히는 ‘죄수’들이 양산되었고 이에 따른 감옥 운영에 관련된 문제와 그에 대한 개선책 등을 『사법품보』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 본 것으로 생각합니다.

1. ‘전통’ 도시 전주와 근대 도시 인천

논문에서 전주와 인천의 감옥을 사례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항장 감옥인 인천 감리서 감옥과 전라감영이 있던 전주의 감옥에 한정하여 제도상의 문제와 옥살이의 실상을 비교,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전라도의 首府인 전주와 1883년 개항과 함께 형성된 인천을 비교하여 ‘전근대’와 ‘근대’의 감옥 운영 및 관련된 문제 등에 대해서도 거론될 것이라고 기대하였습니다. 전주의 경우, 조선시대의 법전 규정에 의해 죄수들을 다룬 관행과 경험으로 ‘근대적’ 감옥으로 전환이 간단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반면에 인천은 개항 이후에 조성된 지역으로 도시 구조 - 감옥의 위치나 형태 등이 다를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2. 滯獄 - 신체형에서 징역형으로

논문에서 근대 감옥 관리문제 가운데 ‘체옥’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조선시대에서 오랫동안 옥에 갇혀 있는 경우가 ‘허다했다’고 하면서 대한제국의 성립 전후한 시기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법전 규정상 감옥 대기 기간이 제한되어 있었고, 징역형이 시행되지 않았으므로, 조선시대 ‘체옥’은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대한 제국기’의 체옥과 같은 의미에서 검토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체옥으로 제시한 사례도 『사법품보』 1897년의 사례인데, 1894년에 “중전에 笞刑 · 杖刑 · 徒刑 · 流刑으로 처결하던 범죄를 모두 懲役으로 등급을 나누어 다스리라.”는 결정 이후에 ‘체옥’이 증가한 것은 아닐까요? 징역이 확정된 기결수로 인해 ‘미결체옥’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아닐까, 그래서 미결체옥자를 줄이고자 노력하였고, 전라북도 재판소의 경우 미결 체옥자가 점차 줄어드는 일정한 성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3. 보방과 석방, 체옥의 개선책일까?

전염병으로 인해 사망하는 미결수와 감옥 관리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잡범죄인 가운데 가볍게 처벌할 만한 자를 우선 보방하자.”는 논의가 있었다고 하는데, 보증인[保授]을 정해 놓고 일시적으로 감옥을 벗어나게 하고 다시 환수한다는 제도가 체옥 문제 해결에 실효가 있었는지.....

또한 징역형을 선고받은 죄수를 감형과 석방을 통해 풀어주는 조치로 체옥을 개선하고자

하였으며, 그 사례로 전주 경무서 소란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감형과 석방된 경우를 거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에서 “다른 많은 郡獄에 갇힌 죄수들의 경우에는 이같은 경축 특사의 혜택을 받은 사례가 거의 보이지 않으며, 인천 감옥서의 경우에도 이런 특사를 받아 특별히 석방된 사례가 잘 찾아지지 않는다.”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전주 경무소 소란죄가 이례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감옥에 보증인을 대신 두는 보방과 사면을 통한 석방이 체육과 관련있는지, 그 개선책이라고 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4. 준비되지 않은 징역형의 시행과 ‘탈옥’

감옥 관리의 부실로 죄수가 ‘탈옥(脫獄)’하는 일이 발생하여 1896년 인천 감옥, 1898년 전주 감옥에서 탈옥하였고, 탈옥범을 체포하지 못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전주의 경우, ‘종신징역’을 선고받은 죄인이 도주하였고 끝내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전형적인 관리 소홀’을 원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신체형이 아닌 ‘종신징역형’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범죄자의 정서(?) 등을 대비하여 감옥 구조를 변경한다거나 감옥 관리 규정 등이 마련되었는지 궁금합니다. 신체형을 대신하여 징역형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정치적 논의나 반발 등은 없었는지, 인간이란 존재에 대한 인식 등에 변화로 인한 자연스런 전환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인천 감옥의 탈옥은 탈옥 주동자 김창수 즉 김구가 관련된 사건으로 감옥 관리와 관련된 문제라기 보다는 개항장 인천의 감옥이라는 점과 그 관리상의 특수한 사정, 감옥에 갇힌 죄수의 입장 등을 좀더 구체적으로 밀도있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탈옥’이라는 관점에서 다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논문을 읽으면서 근대 사법제도의 정비되는 과정에서 감옥은 죄인이 ‘일시적’으로 거처하는 곳에서 형이 집행되는 공간으로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체에 대한 ‘刑罰’이라는 죄에 대한 처벌이 ‘懲役’으로 바뀌면서 감옥의 구조와 관리, 그에 따른 재정 마련 등에 대해서도 등 고려되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징역형’이 시행되면서 체육과 탈옥이라는 문제를 야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1897년 전후의 전주와 인천의 감옥의 체육과 탈옥의 사례를 통해 지방 감옥의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형벌제도의 변화와 그에 대한 제도 정비, 감시와 처벌의 근대적 변화 등등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습니다.

전주대 한국고전학연구소 학술대회

<메모>

구한말 천주교 신앙 자유의 법제화 과정

-전북 지역과 관련하여-

서종태(전주대)

<목차>

- I. 머리말
- II. 「韓佛條約」과 천주교 신앙 자유의 묵인
- III. 敎案을 통한 천주교 신앙 자유의 진전
- IV. 約定·條約 등을 통한 천주교 신앙 자유의 법제화
- V. 맺음말

I. 머리말

한국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하여 문호를 개방한 뒤 1882년부터 서구 열강과도 수호통상조약을 잇달아 체결하여 문호개방의 폭을 넓혔다. 특히 1866년 체결된 「한불조약」은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돼온 정부의 천주교에 대한 박해가 종식되고 신앙의 자유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불조약」과 신앙의 자유 문제는 일찍부터 교회사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아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¹⁾

이 방면의 최초의 연구자인 최석우는 「한불조약」의 조문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전교의 자유를 조문에 명시하는 대신, 기존 수호통상조규 가운데의 어떤 조항을 수정하여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데 그치자는 것으로 타협했다고 주장하였다.²⁾ 그리고 이와 같이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용어는 “언어, 문학, 과학, 법학, 혹은 예술을 학습하나 혹 敎誨, 즉 敎授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가게 되는 프랑스인들은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친선의 증거로서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조문에 나오는 ‘敎誨’인데, ‘敎誨’는 꼭 함축성이 있는 말로써 호의적으로 해석할 때 가톨릭의 윤리와 교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³⁾ 이러한 최석우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의 연구자들은 대체로 「한불조약」에 의해 선교의 자유가 보장된 것으로 이해해 오고 있다.

그러나 「한불조약」의 조문을 협상하는 과정이나 「한불조약」의 신앙 자유에 관한 조문

1) 「한불조약」과 신앙의 자유 문제를 다룬 주요 연구는 다음과 같다. 최석우,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김성균교수화갑기념논총』 (한국사학회, 1969); 「한불조약과 신교자유」 『한국교회사의 탐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최종고, 「한국에 있어서 종교자유 의 법적 보장과정」 『교회사 연구』 3(1981); 박일근, 「한불조약 체결과정에 대한 연구」 『한국정치외교사논총』 3(1986); 이원순, 「한불조약과 종교자유 의 문제」 『교회사 연구』 5(1987); 박찬식, 「한말 敎案과 敎民條約」 『교회사 연구』 27(2006); 노용필, 「천주교의 신앙 자유 획득과 선교 자유 확립」 『교회사 연구』 30(2008); 조현범, 「조불조약과 교회」 『한국천주교회사』 4(한국교회사연구소, 2011).

2) 최석우, 앞의 논문, 205쪽.

3) 위와 같음.

을 살펴볼 때, 한국 정부가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교의 자유를 조문에 명시하는 대신 어떤 조항을 수정하여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타협한 일이 없고, 또한 호의적으로 해석할 때 敎誨하는 내용에 가톨릭의 윤리와 교리도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그대로 따르기에 어렵다는 생각이 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불조약」의 신앙 자유에 관한 조문과 「한불조약」의 협상 과정을 검토하여 신앙 자유의 보장 여부를 밝히고, 다음으로 敎案을 통해 신앙의 자유가 구현되어 간 실상과 이렇게 진전된 신앙의 자유가 약정·조약 등의 체결을 통해 법제화 되어 간 과정을 체계적으로 규명해 보고자 한다.

II. 「韓佛條約」과 천주교 신앙 자유의 묵인

한국은 1876년 일본과 강화도조약을 체결한 이후 1882년 미국, 1883년 영국과 독일, 1884년 러시아와 이탈리아, 1866년 프랑스 등과도 잇달아 수호통상조약을 체결하였다. 이중 일본·미국·영국·이탈리아와 맺은 조약에서는 종교의 자유에 대해 아무런 명시적 언급도 없었다. 1883년 맺은 「한독조약」에서 처음으로 종교의 자유에 대해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1884년 체결한 「한러조약」에서 이를 그대로 답습했는데, 그것은 독일인과 러시아인이租借地에서 그들의 종교 자유를 자유롭게 향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에 불과하였다.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면서 처음으로 조차지 이외의 지역에서의 종교의 자유를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자 노력한 나라는 프랑스였다. 프랑스 선교사들이 이미 한국에서 전교활동을 전개하고 있었기 때문에, 프랑스는 한국과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선교사의 전교 자유와 한국인의 신교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자 하였다. 1866년 6월 4일 체결된 「한불조약」 가운데 종교의 자유에 관한 조문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제4관 2조 : 상기한 지방(제물포, 인천, 원산, 부산, 한양)에서 프랑스인들은 토지와 가옥을 임차 혹은 매수하며, 건물을 건축하며, 점포와 공장 등을 설치할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그들의 종교 의례를 행할 자유를 가진다.

6조 : 프랑스인들은 통상 항과 통상 도시의 주위로 백리 이내에 있는 지대에서 혹은 양국의 관계 당국이 공동 결정한 어떤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다.

프랑스인들은 또한 여행권을 소지한다는 유일한 조건 하에서 조선 영토의 전역을 갈 수 있으며 또 여행할 수 있다. 단 내지에서 점포를 개설하거나 상설 영업소를 설치할 수는 없다. 프랑스 상인들은 조선 정부에 의하여 금지된 서적과 간행물을 제외하고는 각종 상품을 내지로 반입 또한 판매할 수 있으며 지방산물을 구득할 수 있다.

여행권은 영사에 의하여 교부되며 지방 당국의 서명 혹은 날인이 구비되어야 한다. 이 여행권은 조선 관리가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제시하여야 한다. 그 여행권이 정규의 것이면 소유자는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으며, 필요한 수송 기관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여행권이 없이 상기한 경계 이외로 여행하든지 혹은 내지에서 어떤 중죄 혹은 경죄를 범한 프랑스인은 체포하여 가장 가까이 있는 프랑스 영사에게 인도하여 처벌케 한다. 상기 규정한 경계 이외로 여행권이 없이 여행하는 자는 모두 최고 1개월의 금고 또는 멕시코화로 최고 백 불의 벌금에 처한다.

제9관 2조 : 조선에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혹은 어문, 과학, 법학 혹은 예술을 敎授[敎誨]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가게 되는 프랑스인들은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간절히 바라

는 천선의 증거로서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 프랑스로 가는 조선인들도 동일한 편의를 향유한다.

위에서 보아 알 수 있듯이, 「한불조약」에 의해 프랑스인들은 「한영조약」에서와 같이 조차지인 제물포, 인천, 원산, 부산, 한양, 양화진 등의 정해진 지역에서 그들의 종교 의례를 자유롭게 거행할 수 있고, 또한 어떠한 죄를 지어 체포되었을 때 가까운 프랑스 영사관에 인도되어 프랑스 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치외법권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한영조약」의 오락이나 상업이 아닌 목적으로는 여행할 수 없다는 배타적인 뜻을 지닌 “여행권인 護照를 소지하면 오락이나 상업 목적으로 조선 내지를 여행할 있다.”는 규정과 달리, 「한불조약」에서는 “여행권인 호조를 소지한다는 유일한 조건 하에서 조선 영토의 전역을 갈 수 있으며 또 여행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프랑스인들은 구체적인 여행 목적을 밝히지 않고도 호조만 있으면 조선의 내지 어디든지 여행할 수 있게 되었다.

아울러 「한영조약」의 “양국의 민인이 언어, 문학, 과학, 법학, 혹은 예술을 학습하기 위하여, 혹은 과학 학습을 위하여 상대국으로부터 가게 되면 가능한 모든 편의를 허여한다.”라는 규정과 달리, 「한불조약」에서는 “조선에서 학문을 연구하기 위하여 혹은 어문, 과학, 법학 혹은 예술을 교수[敎誨]하기 위하여 조선으로 가게 되는 프랑스인들은 서로 조약을 맺은 나라가 간절히 바라는 천선의 증거로서 언제든지 원조와 지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프랑스인들은 조선에서 언어, 문학, 과학, 법학 혹은 예술을 학습할 뿐만 아니라 교수할 수도 있었다. 그러므로 프랑스 선교사들은 호조를 발급받아 한국 전역을 여행하며 한국인에게 교수할 수 있었고, 죄를 짓더라도 한국의 법에 의해 처벌을 받지 않게 되었다. 따라서 프랑스 선교사는 정부의 박해로 더 이상 처형될 일이 없게 되었다. 하지만 치외법권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한국인 신자들은 「한불조약」 이후에도 1888년 尹鳳文(요셉)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이유로 거제도에서 체포되어 진주 병영에서 교수형을 당한 것처럼 정부의 박해로 언제든지 처형될 수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 선교사들이 한국의 내지를 여행하며 한국인에게 교수할 수 있는 내용은 언어, 문학, 과학, 법학 혹은 예술로 한정되었다. 그들이 교수할 수 있는 내용 중에 천주교는 들어 있지 않다. 때문에 프랑스 선교사들은 합법적으로 한국인에게 천주교를 교수할 수 없었다. 그러므로 「한불조약」은 「한영조약」에 비하여 더욱 진일보 된 면이 있었지만 전교의 자유나 신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지는 않았다.

그러면 「한불조약」의 조문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의 자유를 조문에 명시하는 대신, 기존 수호통상조규 가운데의 어떤 조항을 수정하여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타협했다는 주장은 과연 타당한지 「한불조약」의 체결 과정을 살펴보기로 하자. 1883년 10월경 고종은 한국 주재 미국 공사에게 한국 정부가 프랑스와 조약 체결의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이 정보는 곧 프랑스 주재 미국 공사를 통해 프랑스 정부에 전해졌다. 프랑스 정부는 이 제안을 호의적으로 받아들여 1855년 청나라 주재 프랑스 공사 코고르당(Cogordan, 戈哥當)을 전권대신으로 임명하여 조약 체결의 실무를 담당하게 했다.⁴⁾

코고르당 일행은 1886년 5월 1일 한국에 입국하여 5월 7일 한국의 전권대신 金允植과 협상하면서 프랑스 선교사의 전교 자유와 한국인의 신교 자유를 보장하는 조항을 조약에 명시하고자 하였으나 완강히 거부당하였다. 5월 11일과 12일 이틀에 걸쳐 김윤식과 코고르당 사이에 협상이 재개되었다. 이때 코고르당이 프랑스의 선교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자고 주

4) 이원순, 앞의 논문, 82쪽.

장하자, 김윤식은 “만약 전교하는 자를 살해한다는 준칙이 없을 것 같으면, 금령의 해제를 허락한 것과 마찬가지로, 도저히 이런 행위는 불가합니다.”라고 주장하면서도, “우리나라에서 본래부터 전교의 금법을 범하는 자를 벌하여 오다가 요즈음 5, 6년간은 다만 금하기만 하고 주륙은 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여, 선교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넣지 않더라도 그들이 살해되는 일이 앞으로 없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이어 코고르당이 “살해하지 않는다는 빙거가 없으면 무엇으로 불의의 사고를 방지할 기준을 삼겠습니까?”라고 묻자, 김윤식이 “전에 죄를 지은 자를 벌한 것은 정부의 명령이었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해한 것이 아니며, 금일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살해의 명이 없으니, 어찌 백성이 불의의 사고를 감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라고 대답하여, 앞으로 정부에서 선교사를 살해할 명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였다. 아울러 코고르당이 “미국인이 여기 있으면서 전교하는 자가 있습니까?”라고 묻자, 김윤식은 “모릅니다. 저가 전교한다고 말하지 않으니, 어찌 알 수 있습니까? 비록 귀국인이라고 여기서 전교한다고 말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시 한번 밝히 말씀드리지만, 전교는 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 그렇다고 가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라고 대답하여, 선교사들의 전교 활동을 허락하지 않지만 그들이 전교 활동을 하더라도 그것을 모른 채 하여 묵인할 것임을 암시하였다.⁵⁾

5월 19일 한국 정부는 전권대신을 김윤식에서 김만식으로 교체하고 외교고문관 데니(Deny, 德尼)를 협상에 임하게 하자, 코고르당은 프랑스 선교사의 전교 자유와 한국인의 신교 자유를 보장하는 ‘그리스도교 조항’⁶⁾을 법적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만식은 이를 단호히 거절하였다. 이렇게 ‘그리스도교 조항’에 대한 서로의 입장 차이를 확인한 뒤 코고르당은 협상 가능한 조약 초안을 만들어 5월 25일 김만식과 축조심의에 들어갔다. 당시 축조심의한 내용으로 볼 때 조약 초안에 전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대신에 이를 암시하기 위해 ‘學習’ 뒤에 추가한 ‘道理’, 즉 윤리와 ‘敎規’, 즉 교리를 ‘敎誨’하는 내용, 선교사의 ‘내지 거주’ 등의 조문이 들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⁷⁾ 축조심의 과정에서 김만식은 제4관의 프랑스인들의 조차지 이외의 내지 거주를 보장하는 조문을 단호히 거절하였고, 또한 제9관 2조의 ‘敎誨’, ‘敎規’, ‘道理’ 등의 용어도 금령 해제의 의혹을 사기 쉬우니 삭제하여 고치자고 요구하였다. 이에 코고르당이 “‘敎誨’라는 것은 이미 ‘學習’이란 어구가 있으니, 마땅히 먼저 ‘敎誨’하여야 할 것은 의심할 것 없습니다.”라고 말하자, 데니도 역시 ‘敎誨’ 3자는 반드시 억지로 고칠 것이 없다고 말하였는데, 김만식은 금령 해제의 의혹을 사기 쉬우니 지워버리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코고르당이 선교사를 보호하는 조항을 요청하자, 김만식은 이를 거부하면서도 “우리나라가 전에는 나라의 금령이 심히 엄하여 탄로되면 벌하더니, 근래에는 이전에 비하여 약간 이완되었으므로 상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

5) 이상의 협상 내용은 최석우, 앞의 논문, 193~196쪽.

6) 그 내용은 “(1) 한국인은 가톨릭교를 믿을 자유가 있으며, 아무도 이 자유를 방해하거나 강요할 수 없다.” “(6) 선교사들은 전국 각지를 자유로이 여행하거나 정착할 수 있으며 한국 복장을 착용할 수 있다.” 등 모두 11조목으로 되어 있다(최석우, 앞의 논문, 198~199쪽).

7) 1882년 조선어-프랑스어 사전과 조선어 문법책을 인쇄하는 문제로 일본으로 건너가 나가사키에 머물고 있던 코스트 신부는 급히 중국 첩부로 오라는 연락을 받고 가서 딜롱을 만나 추진하기 시작한 조선과 프랑스의 조약 협상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들은 다음에 부레 공사에게 “(전략) 현재 중요한 것은 조약문에 선교사를 반대하는 표현을 삽입시키지 않는 일이다. 이를 위해서는 새 조약문을 작성하기 보다는 기존 조약문을 수정하는 편이 나을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제11조를 ‘상호의 우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양국 국민은 상대 국가의 문자와 언어, 법률, 윤리, 과학, 예술을 배우거나[學習] 가르치는[敎誨] 노력을 격려할 것이다.’로 수정할 수 있겠다.”라고 조언했던 것으로 보아, 조문에 전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대신에 윤리 등을 學習하거나 敎誨한다는 조문으로 그것을 명시하는 것은 원래 코스트 신부의 조언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조현범, 앞의 논문, 64쪽).

하여, 선교사를 보호하는 조항이 없더라도 앞으로 선교사들이 상해되는 일이 없을 것임을 암시하였다.⁸⁾

이렇게 협상의 결말이 애당초의 계획이나 기대에서 점차 멀어지자 코고르당은 한국에 온 것을 후회하고 한때 귀국까지 생각하였으나, 블랑(Blanc, 白圭三) 주교의 간곡한 만류로 “현재의 입장에서 가능한 한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는 길 밖에 없다.”라고 판단하고 계속 서울에 남아 협상을 진행하였다.⁹⁾ 코고르당은 유럽의 기예와 과학을 소개할 학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마침 조선으로서는 필요하다는 데 근거를 두고 특별히 교육을 강조하였으며 국왕께 아뢰어 달라고 김만식에게 청하면서 그날 협상을 마쳤다.¹⁰⁾ 그리고 고문관 데니도 고종에게 한국 정부가 프랑스의 제안을 무례하게 취급하는 데에서 초래될 어떤 좋지 못한 정치적 결과에 대하여 건의하였다.¹¹⁾ 그러자 고종이 진토양난의 입장을 비로소 깨닫고 타협안을 제시했는데, 그것은 제9관 2조의 ‘學習’ 뒤에 ‘敎誨’를 유지하여 프랑스인들에게 학습할 권리와 동시에 가르칠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었다.¹²⁾ 이로써 「한불조약」은 타결을 보아 6월 4일 체결될 수 있었다.

위에서 알아보았듯이, 조약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프랑스인들의 조차지 이외의 내지 거주, 금령 해제, 그리고 선교사를 보호하거나 선교사의 전교 활동을 보장하는 내용 등을 조문에 삽입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하였다. 또한 전교의 자유를 명시하는 대신에 ‘學習’ 뒤에 윤리[道理]와 교리[敎規] 교수[敎誨]하는 내용 추가하여 그것을 암시하려는 것도 거부하여 ‘道理’와 ‘敎規’는 삭제되고, ‘敎誨’만 막판에 고종이 협상 결렬을 우려하여 타협함에 따라 유지되었다. 때문에 전교의 자유를 암시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므로 조약을 협상하는 과정에서 전교의 자유를 조문에 명시하는 대신에 어떤 조항을 수정하여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것으로 양측이 타협하였다는 주장은 성립되기 어렵다. 그리고 敎誨하는 내용에 道理와 敎規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敎誨’는 호의적으로 해석할 때 가톨릭의 윤리와 교리도 여기에 포함시킬 수 있다는 해석도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된다.

한국 정부는 대신에 “우리나라에서 본래부터 전교의 금법을 범하는 자를 벌하여 오다가 요즈음 5, 6년간은 다만 금하기만 하고 주륙은 가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전에 죄를 지은 자를 벌한 것은 정부의 명령이었고 백성들이 마음대로 살해한 것이 아니며 금일에 와서는 정부에서도 살해의 명이 없으니 어찌 백성이 불의 사고를 감히 일으킬 수 있겠습니까?”, “전교는 금하지 않을 수 없지만 그렇다고 가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에는 나라의 금령이 심히 엄하여 탄로되면 벌하더니 근래에는 이전에 비하여 약간 이완되었으므로 상해되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라고 말하여, 프랑스 선교사의 전교의 자유와 그에 부수되는 한국인의 신교의 자유를 묵인할 뜻을 보였다. 이렇게 볼 때 「한불조약」 이후에 프랑스 선교사들이 호조를 발급받아 전국 각지를 다니며 전교할 수 있고 한국인이 신교할 수 있었던 것은 「한불조약」의 체결 과정에서 한국 정부가 전교의 자유와 그에 부수되는 신교의

8) 이상의 협상 내용은 최석우, 앞의 논문, 197~202쪽.

9) 최석우, 앞의 논문, 202쪽.

10) 1886년 6월 5일 코고르당은 한국 입국 이후부터 조약 협상 진행 과정에 관해 보고하면서 “그 이튿날인 5월 26일 두 번째 회담이 열렸습니다. 김만식의 말에 따르면, 조선의 국왕께서는 조약문 제6조에 ‘거주하다’라는 말을 삽입하는 데 동의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윤리 교육과 종교 교육의 문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로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전하께서는 국내에 들어온 프랑스 사람들에게 배울 권리와 동리에 가르칠 권리를 인정하셨습니다.”라고 밝혔다(『프랑스외무부문서』 1(1854~1899)(국사편찬위원회, 2002), 72쪽).

11) 최석우, 앞의 논문, 205쪽.

12) 앞의 각주 8 참조.

자유를 묵인한 것에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코고르당이 ‘學習’ 뒤에 ‘敎誨’를 조문에 삽입하여 「한불조약」을 타결 지은 것은 코스트 신부의 조언을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¹³⁾ 그가 한국 입국 이후부터 조약 협상 진행 과정에 관해 보고하면서 “윤리 교육과 종교 교육에 대한 모든 언급은 금지하면서도 조선의 모든 지역에서 말이나 글, 그리고 과학과 기예들을 가르칠 수 있는 권리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사실상 일본의 프랑스 선교사들이 오늘날 섬나라 왕국의 전 지역에 침투하여 거주하고 있는 것은 프랑스어 교사로서 주어지는 이러한 권한에 힘입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한 것으로 보아, ‘학습’ 뒤에 ‘敎誨’를 조문에 삽입한 것은 프랑스 선교사들이 일본에 처음 진출할 때 프랑스의 언어를 일본사람들에게 가르치는 권한을 바탕으로 일본의 전 지역에 침투하여 거주하게 된 사례를 따른 것임을 알 수 있다.

아무튼 1866년 「한불조약」의 체결로 한국 천주교회는 지난 한 세기 동안 지속돼온 정부의 박해를 종식하고 신앙의 자유로 나아가는 첫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코고르당이 「한불조약」을 체결한 다음날 블랑 주교에게 “한국은 이 조약에 조인함으로써 사실상 박해를 재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종교 자유의 완전한 승인은 아닐지라도 그 길로 향한 제1보를 의미하는 것입니다.”라고 말한 것으로 보아도 알 수 있다.¹⁴⁾

Ⅲ. 敎案을 통한 천주교 신앙 자유의 진전

앞 절에서 알아보았듯이, 「한불조약」에 의해 호조를 발급 받아 전국을 여행할 수 있는 프랑스 선교사들은 정부의 전교활동과 그에 부수되는 신교 활동의 묵인 하에 자신들의 관할 구역을 순회하며 사목 활동을 전개하였다. 이렇게 지방에서 사목 활동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선교사들은 「한불조약」 이전과 같이 지방관이나 지방민에게 박해를 받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였는데, 이때마다 그들은 「한불조약」에 의해 보장된 권리를 이용하여 프랑스 공사의 중재를 요청하여 외교적으로 해결해 나갔다. 이와 같이 외교적인 문제로 취급하여 해결된 사안을 敎案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교안을 통해 천주교회는 신앙의 자유를 차츰 구현시켜 나갔다.

1) 1887년 10월 초 원산에서 전교 중이던 드젯트 신부가 추방당한 사건

1887년에 드젯트 신부는 원산에서 5리 거리의 광석동에 거주하면서 많은 예비자를 가르치고 있었는데, 10월 초 어느 주일날 주일복음을 낭독하고 있을 때 돌연 20여 명의 원산의 불량배가 드젯트 신부 댁을 포위하고 집을 부수고 욕설을 퍼붓고 죽인다고 위협하였다. 이에 드젯트 신부가 경원 부사 이중하에게 항의하니, 부사는 신부에게 호조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아직 호조를 발급받지 않은 드젯트 신부는 「한불조약」에 의하면 각 항구 10리 이내에서는 호조 없이도 임의로 거주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부사는 그러한 조약의 내용은 모른다고 하자, 드젯트 신부는 서울에서 필요한 서류를 얻어올 때까지 며칠간의 여유를 청했다. 그런데 부사가 10월 10일 나졸을 보내어 드젯트 신부에게 원산을 떠날 것을 강요하였고, 드젯트 신부는 부득이 나졸의 호송을 받아 서울로 강제 추방을 당했다. 드젯트 신부

13) 앞의 각주 7 참조.

14) 「뮌헨 문서」 1886-24(1886년 6월 5일자 서한) ; 최석우, 앞의 논문, 206쪽.

는 서울에 이르자 프랑스 공사관의 사무를 대행하던 러시아 공사 웨버를 찾아 중재를 요청하여 교안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통리아문은 교회의 요구를 일부 수용하여 연도의 관리들에게 공문을 발송하여 나졸을 보내 드젯뜨 신부를 원산으로 호송하도록 지시하였다.¹⁵⁾

2) 1891년 2월 25일 대구 로베르 신부의 추방사건

로베르 신부가 경상도 지역을 사목 방문하기 위해 떠난 사이, 1890년 12월 25일 대구 주민들이 사제관에 침입하고 하인을 구타하였다. 그리고 1891년 2월 로베르 신부가 사목 방문을 마치고 사제관에 돌아오자 대구 주민들이 사제관을 찾아와 로베르 신부를 위협했다. 이에 로베르 신부가 2월 5일 대관과 감사를 차례로 찾아가 사건의 해결을 요청했다. 그러나 감사 민정식은 로베르 신부의 통역이 자신과 서양인이 천주교를 믿는다는 사실을 듣고 통역과 서양인을 내쫓으라고 영을 내렸다. 로베르 신부 등은 경상도 경계 밖으로 쫓겨나는 과정에서 통역과 마부들은 아전과 군졸들에게 구타를 당하고 로베르 신부는 주민들에게 위협과 모욕을 당했으며, 사제관은 약탈을 당했다.

이에 로베르 신부는 뮌헨 주교에게 사건을 보고하고, 주교는 다시 드 플랑시 공사에게 보고하여 교안으로 발전하였다. 결국 외아문 독판 민정묵은 교회의 요구를 수용하여 8도의 감사에게 외국인 학대 사건이 발생할 경우, 관련자뿐만 아니라 관할 지방관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회람장을 보내게 하고, 외국인을 학대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경우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경고하는 내용을 담은 포고문을 한국 전역에 게시하도록 했으며, 경상 감사에게 외국인에 대한 모욕과 학대를 금하는 告示를 저잣거리에 게시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대구로 개선한 뒤, 로베르 신부는 경상 감사 이현영으로부터 후한 대접을 받았다. 로베르 신부는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종교의 자유가 크게 진전된 것으로 이해했고, 뮌헨 주교는 로베르 신부가 대구로 개선한 것을 계기로 내지 거주권을 획득한 것으로 해석했다. 또한 미국 공사 허드는 로베르 신부 사건의 결과로 전국에 종교의 자유가 주어질 것으로 보았으며, 프로테스탄트 선교사들은 8도에 게시된 포고문을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진보적인 조치로 여겼다.¹⁶⁾

3) 1896년 6월 진산 군수의 천주교 입교 금지 사건

1896년 6월 되재 본당 구역인 진산에서 신문교우 두 사람이 천주교 신도라는 이유로 관아로 끌려가 몹시 매를 맞았다. 진산 군수가 천주교의 입교를 막고자한 한 때문이었다. 다른 사람이 천주교도를 구타하였다면 별문제가 될 일이 아니었지만, 한 고을을 통치하는 관장이 천주교도를 탄압하는 것은 곧 선교 활동을 막는 중대한 일이었다. 그래서 미알롱 신부는 뮌헨 주교에게 진산에서의 중대한 사건 때문에 상경하겠다는 전보를 미리 보내고 상경하여 보고했다. 주교가 공사에게 중재를 요청하자, 공사가 11월 28일 외부대신에게 그 행패를 알렸다. 이 사건은 수차례 공문이 오가다 1899년 1월 4일 해결되었다. 군수는 프랑스 선교사들의 세력을 의식하여 자신에게 화가 미칠 것을 우려했던지 신부를 찾아가 용서를 청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교우들이 잘못을 저지르면 법대로 처벌하겠지만, 아무 잘못이 없을 때에는 절대로 교우들을 괴롭히지 않겠고, 누구든지 천주교를 믿는 일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며 자유롭게 행하도록 하겠다는 등의 약속을 하였다. 미알롱 신부는 군수에게 만족하다고 말하

15) 최석우, 「개화기의 천주교회」 『한국천주교회의 역사』 (한국교회사연구소, 1982), 170~173쪽.

16) 양인성, 「1891년 대구 로베르 신부 사건 연구」 『교회사 연구』 44(2014), 219~240쪽.

고 화해의 뜻으로 미사주로 사용하는 포도주를 반잔씩 나누어 마셨다.¹⁷⁾

4) 1899년 4월 나바위 베르모텔 신부의 강경포 사건

1899년 강경포에 거주하며 술장사를 하는 김치문(빈첸시오)이 같은 마을에 사는 소금상 조흥도에게 소금을 사고 값을 다 갚지 못하여 시비가 벌어졌다. 조흥도가 김치문에게 하대를 받지 않으려 한다고 말하고, 또 천주학에 적을 두고 이단을 섬기는 주체에 의관이 가당치 않다고 하며 잣과 망건을 부수었다. 그러자 김치문이 나라에서 개화 이후 백정에게까지 잣을 쓸 수 있도록 허락했는데 무슨 이유로 유독 천주교인만 쓸 수 없느냐고 따졌다. 조흥도는 백정은 천민이지만 이 나라 법제를 따르고 있으니 잣을 쓸 수 있지만, 천주학 끈은 외국법을 종승하니 의관이 가당치 않다며, 천주학 끈 천명썸이야 타살할 수 있고 기천 명이라도 무찔러 없앨 권한이 자기에게 있다고 하였다. 조흥도는 일당 서너 명을 시켜 김치문을 무수히 구타하였다.

사태가 이렇게 벌어지자 강경리 신도들이 베르모텔 신부에게 사실을 보고하였다. 김치문도 신부를 찾아와 울면서 자신의 원통함을 호소하였다. 신부는 복사에게 조흥도를 잡아다가 천주교를 멸시한 이유를 따지고, 그런 일이 다시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복사 박제원이 마부를 보내 조흥도를 불러다가 진상을 물었으나, 김치문에게 했던 내용을 부인하였다. 김치문과 대질하려고 그를 찾았으나 행방을 알 수 없어서 조흥도를 그날 밤 나바위 객점에 묵도록 했다. 함. 그런데 나바위 신도들이 조흥도를 끌고 가서 멍석말이를 하였다.

이런 소식을 들은 조흥도의 사촌 조흥서가 4월 4일 집강 윤성여와 부노 최성진에게 가서 사정을 알렸다. 이튿날 최성진이 황산, 강경, 논산 3포구에 통문하고, 징을 울려 장시 사람들을 동원하였다. 그리하여 강경포의 천장옥, 상인 김낙문, 황산포의 최일은 등이 주민 수천 명을 모아 나바위 성당으로 몰려갔다. 최성진, 윤성여 등 지도급 인물들이 신부 방에 들어가 장죽을 물고 신부에게 조흥도를 심문한 일을 힐책했다. 이때 신부가 담배를 꺼내 물자, 시럽해 있던 사람들이 자기 두목 앞에서 서양 놈 주체에 감히 맞담배질을 한다고 큰 소리로 꾸짖고, 밖에 있던 군중들이 복사를 끌어내 집단 구타하였다. 신부도 복사를 구하려다가 폭행을 당했는데, 박제원 복사, 서상준(안드레아) 회장, 강인수(바오로) 회장, 이 베드로 등 4명은 실신할 정도로 많이 폭행을 당했다.

이 사건을 들은 보두네 신부가 뫼텔 주교에게 전보로 보고하자, 주교가 프랑스 공사에게 중재를 요청하여 교안으로 발전하였다. 그런데 외부는 조흥도가 거의 죽게 된 것을 보고 그의 일당이 구해 준 것은 당연한 일이나, 방 문짝을 부수고, 여러 사람에게 중상을 입히고, 선교사를 위협하고 의복까지 찢은 것은 다 무신한 백성의 망동이므로 지방관이 엄격하게 처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하면서, 베르모텔 신부가 죄 없는 평민을 잡아다가 멋대로 구금시킨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였다.

4월 25일 이와 같은 외부의 공문을 받은 프랑스 공사는 범인들에게 중형에 처하도록 촉구하면서 천주교인도 평민과 동등하게 취급을 받아야 한다는 훈령 榜文을 게시할 것과 지방관을 견책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그러자 외부대신 박제순은 당장 할 일은 기왕에 벌어진 불상사를 조속히 해결하고 “모름지기 불편하지 않은 마음으로 서로 대하기에 힘써 무사한 가운데 편안을 얻어야 할 것”과 혹 “본분을 지키지 않고 외국인을 빙자하고 불법한 일을 자행한 교인”이 있거나 “신부가 부당하게 편드는 일”이 있으면 지방관에게 고소할 것이지 혹

17)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I (도서출판 빅벨, 1998), 644~645쪽.

시라도 외국의 종교를 비방하거나 교인들의 결점을 들추어내거나 비난하고 폭행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훈령을 각 군에 통고하고, 강경포에 게시토록 조치하는 한편 배상할 것을 수락하였다.

결국 교회의 요구가 수용되어 관련자들이 중형을 선고 받았는데, 부주교인 두세 신부는 성교회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으뜸 표양이요, 또 그 사람들이 이제 법을 알았으니, 꼭 징역을 보내는 것이 기분 좋은 일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 후 뮌헨 주교와 프랑크 공사가 의논하여 그들을 석방시켜 주었다.¹⁸⁾

IV. 約定・條約 등을 통한 천주교 신앙 자유의 법제화

앞 절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교안을 통해 천주교의 신앙 자유는 점차 구현되어 나갔다. 그리고 이렇게 교안을 통해 점차 진전된 천주교 신앙의 자유는 약정·조약 등의 체결을 통해 법제화 되어 나갔다.

1) 1894년 외아문의 지시에 따라 전라 감사가 만든 평민과 교민의 화호 약조 4개항

동학농민항쟁이 치열해지던 1894년 초에 전라 감사는 “聖敎人(천주교인)에게 행패를 금하는 일로 전령하였다. 이미 각 面에 명령을 내려 단단히 일러 경계한 바 있는데, 이것을 평계 삼아 행패가 있어서 새로이 전령하게 된 것이다.”라고 전제하고 나서 “외아문의 지시를 따라 평민과 교민이 서로 和好하도록 특별히 약조를 만들어 전령하는 바이니 엄격히 준수하여 이를 위반하는 일이 없게 하라.”라는 전령이었다. 전령장은 교민과 평민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경우에 지켜야 할 사항을 4개항에 걸쳐 규정하였는데, 주목되는 것은 “교민도 또한 우리 나라의 백성이니, 우리 백성들이 모질게 학대하거나 모멸하는 폐단을 각별히 금한다.”라고 천주교인의 보호를 강조한 점이다. 그리고 앞서 내린 전령은 환수한다고 하였다.¹⁹⁾

2) 1895년 전라 감사 법률 주사와 전주 본당 복사가 정한 약조

동학농민전쟁이 진정되자 농민군에게 폭행을 당하거나 약탈을 당한 천주교도들 가운데 일부는 재산을 되찾고 자기들을 폭행한 사람들에게 보복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동학농민군에게 입은 사제관의 피해보상 일로 복사 박제원이 모두네 신부와 전라 감사를 만나고 나올 때, 감영의 法律主事인 安 주사가 대청에서 박 복사를 청하였다. 이에 박 복사가 가보니, 그가 말하기를 “우리가 약조를 정합시다.”라고 하기에, 박제원이 “어떻게 무슨 약조를 정한다 말시오?”라고 물으니, 그가 “근일에 들으니 천주교도 중에서 잃어버린 재산을 찾기 위하여 사람을 잡아다가 私刑을 한다 하니, 이는 공평치 못한 일시오. 양관(洋館 성당 혹은 사제관)에서 백성에게 취조할 일이 있으면, 사실을 기록하여 감사에게 편지로 하고, 감사가 교도에게 취조할 일이 있으면 먼저 사실대로 양관에 편지하면, 兩方에서 적당하겠으니, 이렇

18) 김진소, 앞의 책, 655~663쪽.

19) 뮌헨 문서 1894-95(傳令文) ; 최석우, 「西學에서 본 東學」 『교회사연구』 1(1977), 133~134쪽.

게 약조를 합시다.”라고 하였다. 그 말이 합당함으로 박제원은 그와 같이 걱정하고 돌아와 모든 사정을 신부께 말씀드렸다.²⁰⁾

3) 1899년 3월 9일 내부 지방국장 정준시와 뮌텔 주교가 맺은 「敎民條約」

西敎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이미 백여 년이 되었는데, 그 중간에는 성하거나 쇠퇴하고 들어나거나 들어나지 않거나 한 시기가 있었다. 병술년(1886) 이전에는 나라의 금법을 무릅쓰고서 사사로이 서로 전수하여 입교하는 백성들이 꽤 많지는 않았으나 포교하는 방법과 자취가 심히 남을 꺼리고 비밀스러워 나라의 금법을 범하고 화를 취하는 자들이 또 상당히 많았다.

정해년(1887)년 이후부터는 나라의 금법이 이미 풀려서 교민도 점점 많아졌다. 안으로는 한성의 五署와 바깥으로는 지방의 各部에 걸쳐 간간이 敎堂을 만들어 포교를 하여 교인이 된 사람이 병술년 이전에 비교하면 열배가 넘었다.

대개 서교의 원류는 독실하고 거짓이 없으며 선을 좋아하고 義에 나아가는 것인데, 이런 것이 거의 十戒의 가운데에 실려 있다. 어찌 실오라기나 터럭만큼이라도 선하지 않고 의롭지 않은 일을 가르치겠는가?

그러나 근래의 어리석은 인민들이 간혹 이 敎의 본의에 몽매하여 오늘 입교하고 내일 영세를 받으면 스스로 원수도 갚을 수 있고 억울한 일도 펴 수 있으며 비리를 저지를 수 있고 불법을 행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왕왕 분수를 범하고 윤기를 어지럽히는 일이 있다. 진실로 그 폐단을 캐보면 政令의 해가 되고 인민의 불행일 뿐만 아니라 또한 서교에서도 취하지 않는 바이다. 이에 의론하여 조약을 맺어 다음과 같이 나열한다.

제1조 ; 교민의 보호 및 정치 사건은 지방국장과 주교가 서로 상의하여 양조를 세운다.

제2조 ; 전교사는 행정에 간여하지 못하며 행정관은 전교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3조 ; 교민 중에 만약 범법자가 있을 적에는 어느 지바을 막론하고 담당 관리가 잡았을 적에 그 지방 신부는 비호하거나 은닉하지 못하며, 그리고 담당 관리들이 足債(그 경비)라고 핑계대어 만약 토색의 폐단이 있다면, 그 담당 관리는 마땅히 엄히 징계하고 그 비용은 그때마다 되돌려 받는다.

제4조 ; 범법한 교민을 지방관이 재판할 적에 그 지방의 신부는 직접 참석하여 간여하지 못하며, 그 지방관은 애증을 가지고 송사를 판결하여서는 안 된다.

제5조 ; 각 지방 교민들은 신부의 지리라고 핑계대어 평민을 잡아가지 못한다.

제6조 ; 교민 중에 만약 억울한 일이 있어 그 일이 지방관리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못한 자가 지방국에 와서 호소하면 지방국장은 그 해당 군에 지시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한다.

제7조 ; 혹 교중에 관계되는 것으로 그 억울함을 스스로 풀지 못한 자가 지방국에 와서 호소하면 지방국장은 그 해당 군에 지시하여 사실을 조사하여 공정하게 판결한다.

제7조 ; 혹 교중에 관계되는 큰 사건으로서 지방관이 자의대로 조치할 수가 없으면 지방국장에게 낱낱이 알리고 그 해당 지방 신부도 또한 주교에게 다시 보고하면 주교와 지방국장이 서로 알려져 상의하여 처결할 것이며, 또 지방국장과 주교가 자의대로 조치할 수 없으면 지방국장은 대신에게 품신하고 주교는 공사에게 알려 공정하게 처리토록 한다.

제8조 ; 교민이 만약 의외로 재앙에 걸리는 일이 있고, 평민이 아무 까닭없이 모욕을 당하

20) 『전라도 전교약기』, 72~73쪽 ; 김진소, 『천주교 전주교구사』, 563쪽.

게 되면 그 지방관은 유의하여 비호하며 혹시라도 구경만 하여서는 안 된다.

제9조 ; 成約 이전의 어떤 일이라도 물론하고 성약한 일자에 맞추어 시행하다.²¹⁾

4) 1901년 7월 2일 제주찰리사와 제주목사 그리고 三邑의 현감 등과 제주도 담당 프랑스 선교사가 맺은 「教民和議約定」

대한국 정부가 우방의 정의를 생각하여 西敎의 금령을 풀고 외국인을 보호하는데, 섬의 풍속이 어리석고 굼떠, 입교한 자는 능히 分 편안히 하고 敎를 지키지 못하여 藉勢하여 억지를 부리고, 입교치 않은 자는 조정에서 외국인을 보호하는 뜻을 생각지 않고 교당을 질시하여, 서로 원수가 되어 이번의 災禍를 양성하였다. 생각건대, 평민과 교민이 다 같이 대한의 백성[赤子]이니 동포의 정의를 보존함이 마땅하거늘, 한 집안 안에서 서로 싸워 언덕에 붙는 불과 같이 가히 끄지 못하겠으니, 어찌 상심치 아니하랴. 이에 대한민국 찰리사와 제주목사, 그리고 三邑의 장관이 大法國 전교사와 회동하여 약정[差約]을 맺어 백성들로 하여금 미혹치 않게 하여 뒤 폐단을 막으니, 맺은바 조목을 아래에 즉 적는다.

1. 서교는 조정에서 금지 않는 바이니, 백성 된 자는 마땅히 조정의 본의를 삼가 따라 가히 망령되게 헐뜯지 못할지니, 만일 서교를 헐뜯거나 입교한 사람을 능멸하는 자가 있으면 이는 결단코 백성에게 폐해가 되니, 지방관이 규정에 따라 엄금할 일 .

2. 입교 여부는 해당 백성의 目願을 따를 것이니, 강제로 입교시킴이 불가한지라, 종전에 교도가 洗洗이 서교 책을 억지로 주는 폐단이 있었으니, 마땅히 교당에서 규정에 따라 엄금하고, 만일 억지로 주는 것을 내친[放] 백성이 관에 고발하는 경우에는 억지로 준 교민을 관에서 거리낌 없이 懲治하고, 교도로 입교하기를 원한 자도 마땅히 그 인품과 행위를 살펴 입교를 허락할 것이요, 잡된 무리를 함부로 받아 뒤 폐단을 낳게 함이 불가할 일.

3. 평민과 교민은 똑같이 대한의 인민이요, 민사와 형사는 지방관의 권한에 관계되니, 교당에서 침해함이 없을 일.

4. 교민과 평민이 서로 소송하여 교인이 억울하게 패소함을 전교사가 분명히 안 경우에는 마땅히 지방관에게 설명하여 각별히 사실을 조사하여 공론에 따라[從公] 결정하여 조치할 일.

5. 종전에 교민이 교당에 한번 들어가면 관장과 서로 겨루고 엄연히 法司로 자처하여 평민을 수색하여 붙잡아 형벌하고 가둠을 임의로 하니, 공정하지 않고 법에 어긋남이 이보다 심함이 없으니, 이후로 만일 이러한 악습이 있거든 지방관이 붙잡아 와 엄히 다스리고, 교당에서도 해당 교민을 교회에서 내쫓아 비호치 못할 일.

6. 종전에 교민이 남의 전토를 빼앗고 남의 무덤을 파헤치고 남의 처첩을 빼앗으며 虛債를 억지로 바치고, 잡세를 함부로 거두는 허다한 폐단을 가히 말로 다하지 못하여, 평민의 折骨之怨이 되었으니, 이후로 만일 이런 폐풍이 다시 있거든 지방관이 붙잡아 와 엄히 다스리고, 교당에서도 해당 교민을 교회에서 쫓아내 비호치 못할 일.

7. 교민이나 평민이나 죄가 있는 자가 교당에 도피하거든 해당 지방관이 한편으로 전교사에게 설명하고, 한편으로 하인[差使]을 보내 수색하여 붙잡되, 교당이 해당 범인을 비호치 못할 일.

8. 지방관이 교민을 조사하여 캐물을 일이 있어 전령으로 수색하여 붙잡거나 혹 불러 대

21) 최종고, 앞의 논문, 95~96쪽에서 재인용하였다. 이 「교민조약」의 한문 원문은 한국교회사연구소 소장의 뒤편 문서 1899~9로 보관되어 있다.

기하라 하는데, 해당 백성이 敎에 들어감을 믿고 즉시 대령치 않거든 원래 죄 외에 배를 더 하여 엄중하게 처단할 일.

9. 약정을 맺은 뒤에 평민과 교민이 묶은 불화를 버리고 서로 서로 친애하고 화목함을 보존할지니, 만일 혹 다른 무리로 지목하여 서로 관계하지 않거나 혹 이전 일로 원망하는 감정을 품어 능멸하거든 지방관이 문초한 대로[隨問] 엄금하여 각각 그 分을 지키고 生을 편안하게 할 일.

10. 교민으로 해를 입은 자의 수가 매우 많은지라 그 식솔들이 뿔뿔이 흩어져 떠돌아다니 오히려 돌아와 모이지 못하니, 실로 불쌍하고 가엾은 일이니, 마땅히 각각 그 洞으로 하여금 불러다 타일러 편안히 살게 하여 처소를 잃지 말게 하고, 편의한 대로 구휼하여 이웃 마을의 후의를 도모하게 할 일.

11. 이번에 약정을 맺은 뒤에 각 村의 사리를 아는 백성은 스스로 약정을 따라 어김이 없으려니와, 무지한 상사람[小民]은 문자를 알지 못하여 혹 약정을 어기고 화목을 해칠 염려가 있으니, 약정 문을 한문과 한글로 베껴 읍과 촌에 내걸고 각 해당 里綱으로 하여금 일일이 알아듣도록 타일러 조약을 일부러 범하여 스스로 죄에 빠짐이 없게 할 일.

12. 이 약정 문을 6건을 필사하여 각 관과 전교사가 서명하고 날인하여 1건은 外部에 보내고, 4건은 1牧과 3郡에 비치하고, 1건은 교당에 비치하여, 영구히 신빙함을 밝힐 일.

7) 1904년 프랑스 공사 드 플랑시 와 외부대신이 맺은 「宣敎條約」 (「敎民犯法團束條例」)

「범법교민의 단속을 위한 조례작성 건」

삼가 아웁니다. 귀국의 선교사가 본국에 있으면서 지방에 여행한 이래 우리 백성의 아름다운 무리가 매양 의지하여 서교에 나아가 부적을 삼아 죄를 범하고 간사한 짓을 하며 이르지 않은 바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사안이 겹쳐서 나타나 비록 조사를 여러 번 거치더라도 숨긴 죄상을 다 규명하지 못하여 항상 어지러이 뒤섞인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교섭의 깊은 근심일 뿐만 아니라 또한 전교의 본의가 아니니, 빨리 응당 좋은 방법을 잘 마련하여 피자 준수한다면 영원히 서로 편안할 것입니다. 본 대신이 지난번 만나 뵈실 때 더불어 같은 뜻이 있었기에 이에 현 정세와 형편을 참작하고 아울러 장래의 걱정거리를 살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대개 양국이 이미 맺은 조약의 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니, 헤아리건대 또한 귀 공사께서도 응당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잘 헤아려 반드시 회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일을 정하여 서명해 곧 귀국 敎師에게 널리 알려 우리나라 지방 각 관에 머물며 준수하여 위반함이 없으면 진실로 공평 타당함에 합치될 것입니다.²²⁾

이왕부터 말이 있던 범국 선교사에 관한 조약을 일간 프랑스 공사와 외부대신이 체결하여 조인할 터인데, 그 조약은 여덟 가지로 성립하였다.

일은,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 내지에서 선교하는 데 대하여 인민을 억지로 권유치 못할 일.

이는,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 내지에 있을 때에 토지와 가옥을 매입하고 또 건축할 일.

삼은, 프랑스 선교사가 한국 내지에 유람할 때에는 외부 護照章을 가지고 지방관의 보호를 받을 일.

사는, 교인이 타인에게 송사를 당하거나 또 법률을 범할 때에는 한국 관리가 심사하여 공평하게 판결하되 은회치 못할 일.

22) 『舊韓國外交文書』 제20권 法案 2(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72), 458~459쪽.

오는, 교민이 법을 범하거나 또 타인에게 송사를 만나 관청에서 잡아 올 때에 프랑스 선교사가 거주하는 곳에 숨어 있으면, 한국 관리가 잡아 오되, 등한하고 소홀히 들어가지 못할 일.

육은, 프랑스 선교사는 한국의 민사와 형사의 소송에 간섭치 못하되, 교무에 관하여 불복할 때에는 프랑스 공사에게 공소하여 한국 외부와 교섭할 일.

칠은, 교민이 교무를 핑계 대고 스스로 불법한 행위를 행할 때에는 프랑스 선교사가 엄봉히 금지하되, 만일 무겁게 벌할 때에는 그 지방 관리에게 공소하여 조율해 분간해 처리할 일.²³⁾

V. 맺음말

23) 『제국신문』 광무 8년 6월 6일, 「宣敎條約」.

<토론문>

「구한말 전주교 신앙 자유의 법제화 과정 - 전북 지역과 관련하여-」

방상근(내포교회사연구소)

1. 2장에서

- 논문 : 한불조약이 선교의 자유를 보장했다. 거기에 전교의 자유를 암시하는 내용이 있다 등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 의견 : 한불조약이 선교의 자유를 보장했다는 표현은 거의 쓰는 연구자가 없다. 각 주에 인용한 노용필, 조현범 두 분도 신앙의 자유의 토대 구축, 선교의 자유조차 인정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였다.

그리고 전교의 자유를 암시했다는 것은, 협상과정상의 노력, 코고르당이 블랑주교에게 한 말 중, 종교의 자유를 향한 1보를 내디뎠다는 표현 등에서 추정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2. 3장에서

- 논문 : 4가지 교안 사례 소개.

- 의견 : 부제에 전북 지역이 있으므로 전북 지역의 교안 사례를 중심으로 정리했으면 어떨까 생각한다.

3. 4장에서

법제화 과정에서 개신교 자료도 활용하면 좋을 듯하다. 신앙의 자유는 천주교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해서 1898년 6월 선교사 스왈른이 전교용 호조를 발급받는데, 이러한 일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등도 신앙의 자유, 전교의 자유 문제와 관련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다.

4. 4장에서

- 교민조약과 선교조약의 경우, 오늘날 이 조약들은 체결되지 않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데, 그렇다면 이 조약들은 법제화가 아니라, 법제화를 위한 노력이라고 하는 것이 옳지 않을까?

- 그리고 이 조약들을 체결하려고 했던 것은 조선 정부이다. 그리고 이 조약의 성격이 신앙 자유의 법제화라면, 조선정부가 앞장서서 신앙의 자유를 위해 노력했다는 것인데, 과연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옳을까?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 -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

이정옥(전주대)

<목차>

- I. 들어가며
- II. 조선물산공진회와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 III. 조선총독부 칙사(勅使) 이광수
- IV. '조선 현황의 축소판' 전북
- V. 군산의 '불쌍한 조선인'과 '자랑스러운 조선인'
- VI. '성공적인 농촌' 전주
- VII. 전통과 혁신의 공존
- VIII.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과 이리(裡里)

I. 들어가며

일제강점기는 기행문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근대문명의 도래와 함께 발간하기 시작한 신문, 잡지의 영향으로 조선인, 일본인이 조선 각지를 여행하며 쓴 수많은 기행문이 조선 문화계의 한 형태로 정착했다. 최남선, 장지연, 이광수, 유광열, 김영진, 이선근, 심우섭(매일신보 기자) 등의 조선인과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 일본 국민신문 사장, 경성일보 감독), 아베 미쓰이에(阿部充家, 경성일보 사장), 오쿠다 나오타카(奥田鯨洋, 경성일보 기자), 나카지마 쓰카사(中島司, 경성일보 기자) 등 일본인들이 신문과 잡지를 통해 활발히 작품을 발표하였다. 이미 조선시대에도 선비들의 팔도를 유람하며 자연을 체험하고 글로 남긴 유람기가 존재했지만, 일제강점기의 기행문에는 자연을 즐기기 위함보다는 기행문을 통해 신문부수의 증가라는 상업적 성격과 조선총독부의 지배로 '발전'해 나가는 조선팔도 체험을 전하기 위한 정치적 성격이 짙다할 수 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 기행문이 활발히 등장한 배경에는 일본의 신문사 편집방식에서 찾을 수 있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겪은 일본의 신문사는 종군기자를 전장에 파견, 일본군의 현황을 발 빠르게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유일한 매체로서 수많은 독자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후 일본은 1945년까지 국가차원에서 수많은 문인 종군기자를 각지의 전장에 파견하였으며 조선의 문학인들도 이에 동참하였다.

1910년대 조선에는 본격적으로 신문지상에 기행문이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이를 대표하는 이가 '조선 기행문의 개척자'로 평가받은 이광수(1892~1950)이다.¹⁾ 이광수는 1914년 중국 여행기를 다룬 「상해서(上海서)」(『청춘』 3호, 4호, 1914.12~1915.1)를 시작으로

1) 편집부, 「해설」 『이광수전집』 18(삼중당, 1963년), 519쪽.

「해삼위로서(海參威로서)」(『청춘』 6호, 1915.1), 「도쿄에서 경성까지(東京에서 京城까지)」(『청춘』 9호, 1917.7), 「남유잡감(南遊雜感)」(『청춘』 14호, 1918.6), 「오도답파여행(五道踏破旅行)」(『매일신보』 1917.6.29.~9.12, 『경성일보』 1917.6.30.~9.7) 등 1930년대까지 조선, 중국, 일본 등을 여행하며 수많은 기행문을 집필했다.²⁾ 중국, 일본, 조선의 각지를 여행하며 기록한 이광수의 기행문은 일제강점 초기의 동아시아 3국의 정세와 변화를 확인할 수 있는 귀중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본론은 이광수의 기행문 중, 1917년 6월 29일부터 8월 18일까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를 여행하며 기록한 「오도답파여행」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이는 다른 기행문이 단기간에 걸쳐 한정된 장소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반면, 「오도답파여행」은 3개월의 장기간에 걸친 기록이자 조선지역을 두루 여행한 기록이기 때문이다. 또한 조선인 독자를 대상으로 한 조선어 신문 『매일신보』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일본어 신문 『경성일보』에 동시간적으로 게재되었기 때문이다.

선행연구로는 「오도답파여행」의 일본어 집필의 의미를 고찰한 연구와 「오도답파여행」 텍스트의 의미를 분석한 연구가 있다. 우선, 이광수가 일본어를 선택한 이유를 고찰한 연구로 식민지 현실을 일본 ‘정치 및 문화의 중심을 향해 발언’³⁾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근대국어의 성립과정을 거친 일본어를 사용해 ‘근대문학을 향한 열망과 욕망’⁴⁾을 표출하고자 일본어를 선택했다고 평하고 있다.

또한 텍스트론은 「오도답파여행」은 ‘조선의 전통문화를 개혁되어야 할 대상으로 인식했으며 일본의 근대 문화를 이상화’⁵⁾의 대상으로 규정했으며, ‘문명에 대한 식민지 지식인의 이중적 인식’⁶⁾, ‘조선인의 피해 실상을 현지에서 체험하고 이를 “저항”이란 정치 논리로 전환시키지 못하고 식민통치를 위한 일제의 “노력”을 부각’⁷⁾ 시키고 있다고 고찰하고 있다. 즉, 이광수는 「오도답파여행」에서 조선의 문화가 전근대적이라 규정하고 새롭게 거듭나기 위해서는 근대적인 문화를 이룬 일본의 문화를 조선에 이식해야 한다고 역설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본론에서는 텍스트론에 중점을 두어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을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정책을 중앙이 아닌 지방 확인하는 여행으로 규정하고 지역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한다. 답사 중 이광수가 만났던 수많은 조선인, 일본인은 조선총독부의 혜택을 받은 상류층으로 국한되어 있으며 이들로부터 접하는 지역의 변화는 조선총독부의 정책과 별반 다를 게 없기 때문이다. 본론의 고찰을 위해 전북지역 답사 기록을 대상으로 하고자 한다. 신문에 게재된 답사 기사 중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했던 경주(서라벌)의 경우, 신라시대의 유적에만 국한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전북의 경우, 총 11회에 걸쳐 게재되었지만 지역의 농촌, 상공업, 사회, 문화에 걸쳐 다양한 의견들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을 대상으로 한 전북지역 공동체의 변화와 인식을 고찰하는 본 연구는 식민지 조선의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연구가 되기를 바란다.

2) 「금강산유기」(『신생활』 1922.3~8), 「초향록」(『동아일보』 1923.9.9.~9.17), 「충무공 유적순례」(『동아일보』 1930.5.21.~6.8), 「노령정경」(『동광』 1931.10), 「만주에서」(『동아일보』 1933.8.9.~8.23), 「동경구경기」(『동광』 2권9호, 1936.9) 등.

3) 최주한,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파여행」 『민족문화사연구』 55(2014년), 55쪽.

4) 정혜영, 「〈오도답파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현대소설연구』 40(2009년), 331쪽.

5) 이준식, 「일제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37(2000년), 179쪽.

6) 김경미,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 구조와 민족 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 62(2012년), 280쪽.

7) 류시현, 「1910년대 이광수의 시대인식과 전망」 『歷史學研究』 54(2014년), 111쪽.

II. 조선물산공진회와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1905년 이광수는 동학(東學)의 유학생으로 선발되어 일본을 경험했지만 다음해 학비가 끊겨 조선으로 귀국해야 했다. 하지만 1907년 황실유학생으로 다시 선발되어 일본에 건너가 메이지학원 중학에 재학하였다. 졸업 후인, 1910년 귀국해 잠시 오산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한 후 1915년 여름, 와세다대학 예과에 입학, 다음해 와세다대학 문학부에 입학했다. 하지만 고아인 이광수가 일본의 대학에서 유학하기에는 경제적 어려움이 많았을 것이다. 유학 중 이광수가 매일신보에 본격적으로 작품을 게재한 배경은 자신의 글을 알리기 위한 목적도 있었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함이 우선이었다.⁸⁾

매일신보에 단편 작품과 도쿄의 소식을 전하던 이광수는 1917년 1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매일신보에 총 126회에 걸쳐 『무정(無情)』을 연재한다. 본격적인 근대장편소설로 평가받는 『무정』은 도쿄 유학을 마친 엘리트 청년 형식이 신여성 선형과 구여성 영채사이에서 갈등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으며 신연애관과 계몽성을 강조함으로써 이광수라는 이름을 대중에게 알린 계기가 된 작품이다. 연재를 마칠 무렵, 신문사의 편집국 기자인 나카무라 겐타로가 이광수에게 여름방학에 조선 남부지역을 여행하며 기행문을 써 줄 것을 부탁한다. 이는 신문사가 『무정』의 성공에 대한 이광수에 준 위로 여행의 성격이었으리라 사료된다.

조선총독부 조선어 기관지인 매일신보와 일본어 기관지인 경성일보는 6월 26일부터 60일간에 걸쳐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를 여행하는 신진 소설가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기획을 알리는 기사를 게재한다.⁹⁾ 이 기획은 일본인을 대상으로 한 신문인 경성일보에 조선인의 문장을 신는 첫 번째 기획이었으며 동일 작가가 두 개의 신문에 두 개의 언어로 연재하는 이례적인 기획이기도 했다.

신문사의 기획 의도는 이광수가 조선의 각 지역을 직접 체험하며 지역 유지(有志)를 찾아가 조선총독부 '신정(新政)보급의 정세를 살펴보고 식민지 이후 조선의 경제, 산업, 교육, 교통의 발달, 인정풍속의 변천은 물론 흩어져 사라진 명소와 옛 유적을 탐색하고 명현일사(名賢逸士)의 자취를 찾아 널리 소개'¹⁰⁾하기 위함이었다. 즉 식민지 이후 조선 각 지역의 현황과 변화(발전상)를 직접 체험하고 이를 독자 대중에게 알리는 것이 목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신정보급의 정세'와 식민통치로 인한 '조선의 경제, 산업, 교육, 교통의 발달'을 신문사 독자에게 알리기 위한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은 이미 총독부는 개최한 1915년 '시정5주년 기념 조선물산공진회'의 후속 행사의 성격이 짙었다.

1915년 9월 1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경복궁에서 개최된 '시정5주년 조선물산공진회'는 1910년 '한일병합'이후 열린 조선총독부의 최대 사업 중 하나였으며 관람객 연인원 130만 명이 관람하기도 하였다. '시정5주년 기념'이라는 타이틀에서도 알 수 있듯 조선총독부 5년간의 성과를 국내외에 대대적으로 알린 행사였다. 조선총독부 총독인 테라우치 마사타케(寺內正毅, 1852~1919)는 총독부 기관지인 『조선회보(朝鮮彙報)』를 통해 공진회의 의의를

8)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푸른역사, 2016년), 138쪽.

9) 1917년 6월 28일 『매일신보』에 게재된 이광수의 오도답파 여행 일정은 경성-공주-부여-논산-전주-장성-송정리-광주-나주-목포-영암-진도-완도-거제도-통영-마산-진주-부산-통도사-대구-경주-울진-삼척-강릉-양양-장진-금강산-원산-영흥-경성으로 예정되어 있었다. 6월 29일 남대문을 출발하여 9월 10일 경성으로 돌아올 예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0) 『매일신보』 1917년 6월 16일, 1면.

‘조선의 현황을 알릴 축소판이 될 것이며 신정 5년간의 성과를 전시하고 조선민중을 깨우치고 그 지식사상을 계발하며 가능한 많은 내지인(일본인)을 초대해 조선의 실상을 소개함은 조선 개발상 중요’하다고 밝히고 있다.¹¹⁾ 공진회는 ‘조선의 생산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 외국수입품에 대해 판로확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 즉, 일본 생산품을 공진회의 출품 명목으로 선정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식민지 정책에서 식민지를, 본국에서 필요한 원재료의 공급처와 대량생산한 제품의 판매시장으로 규정하는 것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공진회의 의의를 ‘가능한 많은 내지인을 초대해 조선의 실상을 소개함은 조선개발상 중요’하다고 밝힌 테라우치 총독의 견해는 일본 산업체의 조선 진출을 통해서야 비로소 조선이 개발할 수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15년 개최된 조선물산공진회가 조선 팔도를 동일공간에 전시해 관람객인 조선인과 일본인에게 조선의 ‘발전상’을 알리는 무대였다면 2년 후인 1917년 이광수의 「오도답과여행」은 조선의 남부지역에 한정하기는 했지만 관람객인 이광수의 눈을 통해 보는 축소판 조선물산공진회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광수도 공진회의 존재를 알고 있었던 듯 부여를 여행할 때는 조선물산 ‘공진회 당시 오히라(小原) 전 충청도장관의 열성적인 소개로 일본인 사이에는 꽤 널리 알려’¹²⁾졌던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수는 「오도답과여행」 이후 경기도(의정부, 동두천)와 강원도(철원, 원산, 영흥)를 여행하며 9월 14일부터 9월 28일까지 경성일보에 총 7회에 걸쳐 「잠시 영흥까지(一寸永興まで)」를 연재한다. 이광수는 경원선을 타고 해발 1,975미터의 삼방(三防)지역을 지나치며 ‘조선의 절경 가운데 하나로 세계에 자랑할 만하다’¹³⁾고 감탄하며 독자들에게 경원선을 꼭 타 볼 것을 권유한다. 남대문에서 영흥까지의 이광수의 여정은 경원선 열차 안에서 창밖의 자연을 감상하는 기록이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여행은 조선총독부의 철도 부설로 인한 것이며 여행 자체가 조선총독부 ‘신정보급의 정세’를 확인하는 행위라 할 수 있다. 「오도답과여행」 또한 조선총독부에 의해 구축된 교통인프라(기차, 기선, 자동차)를 통해서야 가능했으며 ‘근대화된 조선’을 직접 체험하는 여행이었다 할 수 있다.

III. 조선총독부 칙사(勅使) 이광수

「오도답과여행」은 1917년 6월 26일에 경성을 출발해 8월 18일 경주를 끝으로 일정을 마쳤으며 신문지상에는 6월 29일부터 9월 12일까지 경성일보 35회, 매일신보 54회 게재되었다. 이광수의 여행 일정은 경성출발·공주(6/26)→부여(6/29)→논산(7/1)→전주(7/3)→장성(7/6)→광주(7/7)→나주(7/10)→목포(7/13)→영암(7/16)→진도(7/18)→완도(7/21)→거제도(7/25)→통영(7/28)→마산(7/30)→진주(8/1)→마산·부산(8/4)→통도사·범어사·대구(8/9)→경주(8/13)→울진(8/18)→삼척(8/20)→강릉(8/23)→양양(8/26)→장전(8/29)→금강산·원산(9/6)→영흥(9/8)→경성(9/10)으로 기획되었다. 답사 예정인 지역을 살펴보면 각 지방을 대표하는 도시(공주, 전주, 광주, 목포, 통영, 마산, 진주, 부산, 대구)와 함께 전통 문화유적이 남아있는 지역(부여, 진주, 통도사, 범어사, 경주)임을 알 수 있다. 다음 표는 하타노 세츠코의 논문을 참고로 양 신문에 게재된 기사를 정리했다.¹⁴⁾

11) 「始政五年共進會記念號」 『朝鮮彙報』(朝鮮總督府, 1915년 9월호), 3쪽.

12) 李光洙, 「其の美景、其の感慨」 『京城日報』 1917년 7월 3일.

13) 李光洙, 「一寸永興まで 五」 『京城日報』 1917년 9월 26일.

14) 하타노 세츠코, 「일본어판 오도답과여행을 쓴 것은 누구인가」 『상허학보』 42(상허학회, 2014년).

경성일보			매일신보		
게재일	제목	집필 시기와 장소	게재일	제목	집필시기와 장소
6/26밤	社告		6/16	社告	
			6/26	작가의 말 여정에 오르면서	
			6/26	기사 오도답파여행 특파원 출발	
			6/28	기사 오도답파여행 도정	
6/30	호서에서	6/26 조치원 공주	6/29	제1신	6/26 조치원
			6/30	제2신	6/26 공주
7/1	호서에서	6/26 공주	7/1	제3신	6/26 오후12시 공주
7/2	호서에서	6/26 공주	7/3	제4신	6/27 이인시장
			7/1	기사 6/28 백제 옛 도읍지에서	
7/2	기타 경치, 감회	6/27 계속	7/4	제5신	6/28 부여
				제6신	6/29 부여
7/3	기타 경치, 감회	6/27 부여	7/5	제7신	6/30 백마강
			7/6	백마강에서	6/30 오후2시 제8신
			7/7	군산에서	7/2 오전10시 군산
			7/4	기사 7/2 이리역에서	
7/6	호남에서	7/3 오후4시 전주	7/8	전주에서(1)	7/2 전주객사
7/6	호남에서	7/3 오후4시 전주	7/10	전주에서(2)	7/3 오후 전주객사
7/8	호남에서	7/4 오후3시 전주	7/7	기사 7/6 전주에서	
7/9	호남에서	7/5 오후8시 전주	7/11	전주에서(3)	7/6 아침 제12신
7/10	호남에서	7/6 아침 전주	7/12	전주에서(4)	7/6 아침 제13신
7/14	호남에서	7/7 이리	7/13	이리에서(1)	7/6 밤 이리 제14신
7/25	호남에서	7/9 이리	7/14	이리에서(2)	7/8 이리에서 제15신
			7/10	기사 7/7 이리에서	
			7/15	이리에서(3)	7/8 아침, 이리
			7/13	기사 7/11 광주 오도답파 기자	
			7/14	기사 7/12 나주에서 (오후 4시 목포 도착예정)	
7/17	호남에서	7/14 목포	7/17	목포에서	7/14 목포
7/17	게재휴간기사 7/14		7/17	게재휴간기사 7/14	
			7/24	광주에서(1)	7/21 목포
			7/25	광주에서(2)	7/21 목포
			7/26	광주에서(3)	7/21 목포
			7/27	목포에서(1)	7/21
7/26 석간	다도해 1	7/23 순천호	7/29	다도해(1)	7/23 순천호
7/27 석간	다도해 (2)	7/24 순천호	7/30	다도해(2)	7/24 순천호
7/28 석간	다도해(3)	7/24 밤 해신호	8/3	다도해(3)	7/24 밤 해신호
7/29 석간	다도해(4)	7/24 삼천포	8/4	다도해(4)	7/24 밤 삼천포
8/11 석간	영남에서	8/1 진주	8/12	진주에서(1)	진주
			8/14	진주에서(2)	7/26 진주
8/12 석간	영남에서	8/2 진주	8/15	진주에서(3)	7/27 진주
8/13 석간	영남에서	8/2 진주	8/16	진주에서(4)	7/27 진주
8/16 석간	통영에서	8/3 밤	8/5	통영에서(1)	7/29 통영

경성일보			매일신보		
게재일	제목	집필 시기와 장소	게재일	제목	집필시기와 장소
8/17 석간	통영에서	8/3 밤	8/7	통영에서(2)	7/29 통영
			8/8	동래온천에서(1)	7/30 동래온천
			8/9	동래온천에서(2)	7/31 밤 금정
			8/10	해운대에서	8/1 밤 해운대
			8/17	부산에서(1)	8/4 부산
			8/18	부산에서(2)	8/5 아침 부산
			8/23	마산에서(1)	8/7 마산
			8/24	마산에서(2)	8/6 마산
			8/25	대구에서(1)	8/10 대구
			8/26	대구에서(2)	8/11 대구
			8/28	대구에서(3)	8/15 대구
8/29	신라 옛 도읍지(1)	8/15 경주	8/29	서라벌에서(1)	8/15 경주
8/30	신라 옛 도읍지(2)	8/15 경주	8/30	서라벌에서(2)	8/15 경주
8/31	신라 옛 도읍지(3)	8/15 경주	8/31	서라벌에서	
9/2	신라 옛 도읍지(4)		9/2	서라벌에서(4)	
8/26	신라 옛 도읍지(5)		9/3	서라벌에서(5)	
8/29	신라 옛 도읍지(6)		9/4	서라벌에서(6)	
8/30	신라 옛 도읍지(7)	8/16 밤 경주	9/5	서라벌에서(7)	8/16 경주
8/31	신라 옛 도읍지(8)	8/16 밤 불국사	9/6	서라벌에서(8)	
9/2	신라 옛 도읍지(9)		9/7	서라벌에서(9)	
9/3	신라 옛 도읍지(10)		9/8	서라벌에서(10)	
9/5	신라 옛 도읍지(11)	8/17 불국사	9/9	서라벌에서(11)	8/17 불국사
9/6	신라 옛 도읍지(12)	8/17 경주	9/10	서라벌에서(12)	
9/7	신라 옛 도읍지(13)	8/18 경주	9/12	서라벌에서(13)	8/18 경주

신문에 연재된 기사를 통해 이광수의 실제 여정을 살펴보면 경성출발(6/26)→공주(6/26)→부여(6/27~7/1)→군산(7/2)→전주(7/2~7/6)→이리(7/6~7/8)→광주(7/8~7/12)→목포(7/12~7/23, 이질로 2주가량 입원)→삼천포(7/24)→진주(7/25~7/28)→통영(7/28~7/29)→부산(7/30~8/6)→마산(8/6~8/10)→대구(8/10~8/16)→경주(8/16~8/18)로 몇 몇 지역은 계획했던 도시를 벗어나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논산, 장성, 나주, 영암, 진도, 완도, 거제도, 통도사, 범어사, 울진과 강원도 지역이 여정에서 빠져 있으며 예정에 없었던 군산, 이리, 삼천포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는 당시 장마로 인한 기후의 영향과 함께 나주답사

이후 이광수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던 것과 연결할 수 있다. 여정은 예정했던 기간을 한 달여나 앞당겨서 끝내고 있다.

하지만, 1926년 3월 26일부터 50여 일간 옛 백제지역인 전라도 지역(전주, 김제, 장성, 정읍, 변산, 담양, 광주, 지리산 등)의 명산을 순례하며 국토를 예찬했던 최남선의 『심춘순례(尋春巡禮)』의 여정이 사찰과 명산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광수의 여정은 교통인프라가 잘 정비된 지역이 중심이며 일제강점기 이후 급성장한 지역, 조선총독부의 '신정보급'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들임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의 현황을 알릴 축소판'을 여행한 이광수는 그를 맞이하는 지역의 대대적인 행사를 소상히 묘사하고 있다. 이는 양 신문사가 각 지역의 관련 및 지역 유지에게 이광수의 답사의 원조를 부탁하며 동정과 제반 편의¹⁵⁾를 봐 줄 것을 요청한 결과이며 다음 글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全州驛前에는 柳支局長과 全州靑年俱樂部員 諸氏의 精誠되게 맞아주심을 받고, 數行을 行하다가 道參事요 全州에 名聲이 높으신 鄭春岡과 全州農工銀行의 取締役이요 전주金融組合長이신 李康元 兩氏의 맞아주심을 받았다. 全北參與官 金潤晶氏가 名衝으로 물어주심에 對하여서도 精誠된 感謝를 드린다.¹⁶⁾

25세의 젊은 조선인 신진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 이광수의 도착을 위해 찌는 듯한 무더위 속에서도 신문사 지국장과 지역 청년단체, 지역 경제계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대기하고 있었음을 살펴볼 수 있다. 또한 이광수를 위해 전주에서 마련한 환영회에는 이진호 도장관, 마쓰나미 전북일일신문사 사장 등 지역의 중심인물 4, 50인이 참가했다. 지역을 찾은 중앙의 신문기자 이광수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장면이다. 전주뿐만 아니라 이광수가 머물렀던 대부분의 지역에서 그를 환영하는 행사가 성대히 개최되었다. 환영회에는 지역의 장관(도지사)은 물론 경찰서장, 헌병대 관계자, 경제계, 문화계 인사가 참석했으며 한산도 유람을 위해서는 경찰서에서 경비정을 제공했으며 경주 고적답사에는 전속 경찰관(순사부장)이 처음부터 끝까지 동행하기도 했다. 조선총독부 '신정 7년'의 성과를 알릴 절호의 찬스인 이광수의 답사를 위해 각 지역이 군과 경찰력까지 동원했음을 볼 때, 이광수는 일개 신문사 기자가 아닌 조선총독부 권력 그 자체로 받아들여졌음을 알 수 있다. 각 지역이 이처럼 이광수를 환대했기 이면에는 젊은 조선인 소설가 이광수보다는 이광수를 지원하고 있는 식민지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총독부의 기관지 경성일보, 매일신보라는 식민지 최고 문화권력 기관의 존재를 의식했기 때문일 것이다.

IV. '조선 현황의 축소판' 전북

전북을 제외한 타 지역의 답사가 문화 유적(부여, 경주)과 자연 유적(다도해, 통영)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일제강점기 지역 조선인에 관한 묘사가 한정된 반면, 전북의 경우 미륵사지와 왕궁리 오층석탑을 답사한 익산을 제외하면 군산과 전주의 묘사는 대부분 지역 조선인의 현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다.

이광수의 전북 답사는 장마의 영향으로 군산에 머문 6월 30일부터 7월 8일까지 이루어졌

15) 「社告」 『京城日報』 1917년 6월 26일, 1면.

16) 이광수, 「전주에서(1)」 『매일신보』 1917년 7월 8일, 2면

으며 7월 2일부터 6일까지는 전주, 7월 6일부터 7월 8일까지 익산을 답사하는 일정으로 이루어졌다. 이광수의 답사는 객사, 경기전, 조경묘, 건지산, 오목대, 한벽루, 미륵사지 등 문화유적 답사와 함께 대장촌의 호소카와 농장, 물산진열관, 간이공업학교, 양잠강습소 등 산업 관련 시설이 중심이었다. 다음은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게재된 이광수의 전북 관련 답사 내용을 정리한 표이다.

	경성일보	기사내용	매일신보	기사내용
1917/07/06	湖南より	전주도착, 양잠장려, 제지업, 수리정비, 수리조합		
1917/07/07	湖南より	전주의 조선인 상공업의 빈약, 일본의 대자본가의 전주 투자 필요성	군산에서 / 전 주 에서 (안내)	개항장, 곡물수출항, 조선인 노동야학교
1917/07/08	湖南より	전주 시가지 관광, 다가정, 한벽당, 경기전, 기생, 대장촌 참관	전주에서1	전주 역사(삼한, 백제, 조선)
1917/07/09	湖南より	관민 융합의 훌륭한 전주, 일본인의 지식과 조선인의 자본의 투자로 전주 활성화, 전주 미인		
1917/07/10	湖南より	예술적인 전주(미술공예, 음악) 조선의 교토=전주	전주에서2 / 이 리 에서 (안내)	※경성일보 7월 6일 기사와 동일
1917/07/11			전주에서3	물산진열관, 양잠강습소 여자부, 전주여자양잠전습소(박영근), 행려병자 숙소(자선사업)
1917/07/12			전주에서4	※경성일보 7월 10일 기사와 동일
1917/07/13			이리에서1	※경성일보 7월 14일 기사와 동일
1917/07/14	湖南より	호소카와농장의 경영법(우수 소작인에게 표창, 품종개량), 조선인 악덕지주, 지방금융조합, 수리 정비	이리에서2	이리지역 소개, 지역 농민의 빈궁, 백미, 수리조합
1917/07/15			이리에서3	마한의 고도인 이리, 금마, 미륵사
1917/07/17	湖南より	목포 (이광수의 세균성 이질 입원)		
1917/07/25	湖南より	이리, 이리의 일본인 증가, 조선인과 일본인의 평행한 발전에 의해서만 건전한 발달이 가능		

경성일보와 매일신보에 모두 8회씩 게재되었지만 경성일보가 전주6회, 이리1회, 작가 근황 1회인데 비해, 매일신보는 군산 1회, 전주4회, 이리 3회로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매일신보의 경우 작가가 전주, 군산, 이리를 여행하며 만났던 조선인들의 이름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으며 지역사가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반면, 경성일보의 경우 조선인들의 이름은 전혀 거론되지 않았으며 관리의 경우 참사관 등 직명으로만 간략화하고 지역사를 전혀 거론하

지 않았다. 경성일보의 경우, 이러한 지역의 조선인 이름과 지역사는 그들의 독자인 일본인에게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V. 군산의 ‘불쌍한 조선인’과 ‘자랑스러운 조선인’

장마의 영향으로 답사 예정에도 없던 군산에서 이틀을 머문 이광수는 전주에 도착한 7월 2일 군산에서의 일을 회상한다. 6월 30일 오후 강경에서 출발한 이광수는 오후 10시가 되어서야 군산에 도착한다. 지역의 광활한 평야지대를 평하며 ‘뜰에 나가 먹고 산에 들어와 자는 것’이 지역의 일상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일제강점기 군산은 일본인들에 의해 급성장한 대표적인 식민도시로 평가받고 있다. 당시 군산을 소개하는 대부분의 신문기사는 짧로 대표되는 군산, 미곡수출항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군산항, 군산 시내의 근대적인 도시 풍경은 군산을 대표하는 이미지로 장식했다. 예를 들면 1913년 8월부터 1918년 6월까지 경성일보사의 사장을 역임한 아베 미츠이에(阿部充家, 1862~1936)가 군산, 전주, 광주, 나주 지역을 여행하며 기록한 「호남유역 무불거사의 이야기(湖南遊歷 無佛居士の談)」가 대표적이다.

기사는 경성일보 1916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 총 9회에 걸쳐 연재되었다. 전주는 10월 1일 「湖南遊歷(六) 無佛居士の談 李祖發祥の地」에서 문화도시로, 10월 2일 「湖南遊歷(七) 無佛居士の談 米の群山」은 쌀의 도시 군산으로 기록하고 있다. 아베의 군산기행은 군산에 산재한 정미소 탐방, 신사 참배, 군산항 개축 현장 답사로 이루어졌으며 이는 일본의 식민지 근대도시 군산을 가장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이미지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광수의 군산답사기에는 근대도시 군산을 확인할 수 있는 이미지를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이광수는 군산의 일본인들 속에서 이루어진 조선인들의 상업 활동과 교육 활동을 묘사하며 감사를 전하고 있다. 첫째, 일본인 경영의 상점들로 가득 찬 군산 중심가에 ‘김의숙(金義淑)을 비롯한 조선인 거상들의 가게가 즐비한 것’을 기록하고 있다. 이광수의 군산 여행기에는 일본인들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으며 일본의 식민지 근대도시로 거듭난 군산임에도 불구하고 조선과 조선인만을 그리고 있다



개북동 양영학교 교사(校舍)와 교장 신석우(오른쪽)
매일신보 1934년 4월 28일, 4면.

둘째, 이광수는 1917년 7월 7일 매일신보에 ‘모든 문명국에서는 노동자의 생활 보장, 교육 보급과 위안 획득에 관한 다양한 제도와 설비가 있지만’ 조선인 노동자는 이러한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해 ‘불쌍한 조선노동자’라고 기술하고 있다. 하지만 군산의 조선인 객주조합과 노동자조합이 합심해 ‘불쌍한 조선노동자’를 위해 노동야학교를 설립하려는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신석우(申錫雨), 문명진(文明眞), 김철수(金綴洙) 등 군산의

유력인사들에 의해 추진된 노동야학교는 이광수가 군산을 답사하기 1주일 전인 8월 25일 청년야학교로 개교한 상태였다. 신석우가 초대교장을 맡고 있었으며 1933년 4년제 사립학

교인 양영학교(養英學校)로 변경해 주간 여자부(107명), 야간 남자부(101명)로 ‘무산아동 교육기관으로는 유일무이¹⁷⁾한 학교였다. 이광수는 ‘근면하고 선량한 노동자’를 교육시키는 양영학교야말로 ‘사회국가의 복리’를 이룩하고 ‘상공업자인 자산가에게도 큰 이익’이며 ‘사회와 국가의 의무’를 다하고 있다고 높이 평가하고 있다.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조선인을 위한 양영학교 활동은 조선총독부의 ‘신정(新政)’이 군산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후 양영학교는 300여명의 노동자 자제들의 교육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조선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났으나, 1936년 재정난과 학생 수 감소로 폐교에 이르렀으며 교장이었던 신석우는 군산의 대표적인 친일인¹⁸⁾으로 변신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이광수의 군산답사는 조선총독부의 ‘신정’의 결과인 군산의 이미지를 전혀 거론하지 않았으며 조선인 객주조합과 군산의 조선인 상인들의 활약상을 그리고 있다. 군산 거주 조선인의 활기찬 모습을 전하는 이광수의 군산 여행기는 신문사 총책임자인 아베에게 조선총독부의 정책으로 인해 발전된 군산의 모습을 전달하기에 적절하지 못했을 것이었으며 경성일보에는 게재되지 못했다. 하지만, 심원섭이 지적하듯 아베는 이광수의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그를 친일의 길로 인도한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한 인물이 아베이기도 하다.¹⁹⁾

이광수의 군산 답사는 ‘자랑스러운 조선인’의 활약상을 매일신보 조선인 독자들에게 전한 것이 아닌 근대 식민도시 군산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불쌍한 조선인’의 모습 그 자체였다고 할 수 있다.

Ⅵ. ‘성공적인 농촌’ 전주

군산의 ‘자랑스러운 조선인’들의 활약상에 감격한 이광수는 7월 2일 이리를 거쳐 오후 4시경 전주에 도착한다. 이광수가 전주에 머물렀던 7월 6일까지 전주는 연일 계속된 비로 답사는 도청, 객사의 물산진열관, 간이공업학교, 양잠강습소 등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이광수는 전주를 백제시대부터 미술과 음악, 공예에 뛰어난 지역으로 조선시대 유교사회의 영향으로 전주의 예술인들을 천시하던 문화를 하루빨리 일소하고 이들을 인정하는 사회문화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또한 수리조합의 성공적인 활약을 극찬하고, 전주와 순천을 잇는 철도의 건설을 제안하거나 제지공업과 양잠을 장려해 지역과 농민들이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구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대장촌(大場村)에 개설한 호소카와 농장(細川農場)을 견학한 이광수는 우수 조선 소작인을 표창하며 품종개량과 농기구 개량을 적극적으로 시행한 농장을 일본인과 조선인이 협력해 이룬 ‘성공적인 농촌’이자 ‘조선 지주의 모범’으로 표현하고 있다. 호소카와 농장이 관개, 방수시설 및 경지정리 사업 등 농업 인프라 구축, 치안시설, 교육시설, 교통수단 등 다각적

17) 「更生한 養英學校 新校舍를 建築」 『매일신보』 1934년 4월 28일.

18) 신석우(申錫雨, 1869~1942): 1900년 경 경성관립중학교 교관은 역임했으며 대표적인 전북지역 실업가이다. 군산부 참사(1917), 군산부 협의 회원(1918), 군산부 객주조합장(1920), 중추원 참의(1921~1924), 호남물산주식회사 감사(1924~29), 유도진흥회(儒道振興會) 전북총지원장(1929~) 등을 역임한 전북의 대표적인 친일파로 평가받고 있다(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2007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 조사보고서2-1』 (2007년), 673쪽~682쪽.).

19) “옹과 만나면 나는 마음을 터놓을 수 있어서 기뻐다. 시국에 관한 이야기나 내선 융화 등의 말을 옹의 입으로부터 들은 기억은 없다. (중략) 조선인 중에서 옹에게 폐를 끼친 사람은 옹의 만년 20여 년 동안 수백 명에 이를 것이다. 어쩌면 천 명이 넘을지도 모른다. (중략)그 가식이 없으며 모든 차별을 초월한 우정에 감동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광수, 김원모·이경훈 편역, 「무부즈 옹의 추억」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1997년), 244쪽.).

인 사회간접 자본을 창출함으로써 '성공적인' 농장을 유지했다는 사실에는 변함없다. 하지만, 호소카와 농장의 '성공적인 농촌' 경영전략은 '지역 사회의 개발과 발전을 동시에 추구함으로써 조선에서의 토지집적이라는 대의명분을 획득하기 위함'²⁰⁾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1920년대 이후 농촌을 떠나 도시의 빈민으로 전락하게 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수리조합의 하천개수, 저수지 축조, 관개공사 등의 사업을 들 수 있다. 호소카와 농장이 전북의 다섯 곳의 수리조합 전익(全益), 임익(臨益), 임옥(臨沃), 임익남부(臨益南部), 옥구서부(沃溝西部)중 전익수리조합을 주도적으로 설립했으며 농장의 주임이 조합장을 역임했을 만큼 영향력이 대단했다는 점 또한 주의해야 한다.

호소카와 농장을 견학하며 조선인의 자발적인 힘이 아닌 일본에 의해서야 비로소 조선이 '성공적' 산업을 이룰 수 있다는 이광수의 사고는 '가능한 많은 내지인'들이 '조선에 진출'해야 '조선이 개발'될 수 있다는 조선총독부(테라우치총독)의 식민지 정책과 일맥상통하고 있다. 또한 전주의 전근대적인 조선인 상공업에 주목한 「호남에서 2 (湖南より 2)」(경성일보, 1917년 7월 7일)는 '일본의 대자산가가 보다 많이 조선으로 건너와 대공업을 일으키는 것이야말로 직접적으로는 직업 없는 조선인에게 생활의 길을 제공해줄 것이며 간접적으로는 조선인의 상업에 한층 기운을 줄 것이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광수가 꿈꾼 일본인과 조선인의 협력에 의한 조선의 '성공적인' 산업의 결과는 1926년 개최된 조선박람회를 취재한 조선일보 사회부장 유광렬(1898~1981)의 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朝鮮人の 出品이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쌀붕지, 좁쌀붕지, 과일 몇 개, 말른 고기 몇 마리를 出品하지 않은 건 아닙니다. 水利組合이 되어 土地가 開拓되는 것도 事實이요, 길이 넓어지고 警察이 밝아지고 裁判이 文明式으로 된 것도 事實입니다. 그러나 이 事實에는 明白한 矛盾이 潛在하여 있습니다. 朝鮮人이 前記와 가튼 出品이 잇는 反面에 朝鮮에 와잇는 日本人의 出品이 더욱 隆盛하며 朝鮮人은 손도 대어보지 못한 鑛業, 林業, 大規模의 工業에 對한 것은 모다 日本人의 손으로 되지 안았는가. 一言以蔽之하면 이 땅에서 연 朝鮮博覽會는 當然히 朝鮮人이 그 主人公이 되어야 할 것이어늘 이와 反對로 日本人이 主人公이 되었스니 主客이 顛倒되지 안았는가. 水利組合이 되어 土地가 開拓되는 反面에 幾多의 小中農이 組合費에 못견디어 祖先傳來의 땅을 팔고 離鄉의 哀歌를 부르지 안았는가. 찬밥덩이를 싸가지고 다니며 닥가노은 길에 自動車 타고 다니는 사람은 따로 잇지 안은가.²¹⁾

유광렬은 1926년 5월 조선총독부, 경성부, 조선신문사의 후원으로 개최된 조선박람회에서 전시된 물품의 대부분이 일본인이 만든 것으로 배치되었으며 조선의 것은 수공업품을 통해 만들어진 물품밖에 없다고 지적하였다.²²⁾ 3년이 흐른 1929년 개최된 조선박람회 역시 공업화로 생산된 물품은 일본인이 독점하고 있었으며 조선인은 1차 산업에서 수확한 물품만을 전시할 뿐이었다. 박람회의 주인공은 일본인이었으며 조선인은 들러리에 불과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호남에서 7 (湖南より 7)」(경성일보, 1917년 7월 25일)에서 이광수는 조선의 산업이 부진한 이유는 '일본인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적한다. 이는 조선을 기반으로 산업 활동을

20) 정승진·마츠모토 다케노리, 「영주에서 식민지 대지주로- 일본 귀족 호소가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 264쪽.

21) 유광렬, 「무슨 評을 하리까」 『新民』 53(신민사, 1929), 43~44쪽.

22) 유광렬, 「조선박람회를 보고」 『개벽』 제70호(개벽사, 1926. 6월호), 101쪽.

하려는 일본인 사업가의 부재를 의미하며 이들이 조선인에게 자극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선각자로서 내지인’의 각성이 필요함을 역설하고 있다. 이는 제국주의 일본이 조선을 식민지화하기 위해 세운 문명과 미개라는 이분법적인 구도와 다를 바 없다.

VII. 전통과 혁신의 공존

이광수가 전주를 답사하며 지역 문화 중 높이 평가한 것이 교풍회(矯風會) 활동이다. ‘재래 관습 중 보존할 것은 보존하고 개혁할 것은 개혁’하기 위해 조직된 교풍회는 전통 향약과 비슷한 일제강점기 도시형 문화 운동이라 할 수 있다. 교풍회는 1910년대 전국 각지에서 조직되기 시작했으며 자선사업을 통해 빈민 구제의 역할을 담당했다.

하지만 교풍회는 이미 1800년대 후반에 일본에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었다. 교풍회는 1893년 일본의 기독교계를 중심으로 조직되었으며 여성과 어린이의 인권을 수호하고 복지활동에 주력했으나 점점 범위를 넓혀 금주, 공창제폐지 등 폭넓은 사회운동으로 전개되었다.

일제강점기 조선에서도 교풍회 활동이 신문에 자주 게재되었다. 지역 기관장의 지도를 중심으로 관민은 물론 전주의 경우, 일본인도 회원으로 참가할 수 있었다.²³⁾ 교풍회의 활동은 도박을 일소하기 위한 군산의 교풍회 활동²⁴⁾, 지방 풍속과 효행을 강조하기 전주의 교풍회²⁵⁾, 행려병인을 구제하기 위한 전주의 교풍회²⁶⁾ 등으로 미풍양속의 계승과 낡은 풍속과 관습을 개량하고자 한 이풍역속(移風易俗) 운동이었다 할 수 있다.

이광수가 특히 주목한 것은 전주 교풍회의 행려병자 구제로 일제강점기 이 지역의 특징을 확인할 수 있는 주요 키워드이다. 일제강점 초기, 조선 전역의 행려병 사망자수 통계를 보면 1916년 총 1,511명 중 전북(171명-남성, 39명-여성), 경성(144명-남성, 31명-여성)으로 전북에서 사망한 행려병자가 조선에서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다. 1917년에는 전북(280명-남성, 71명-여성), 1918년에는 307명(남성), 57명(여성)으로 경성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했다.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통계년보(朝鮮總督府 全羅北道年報)』를 통해 전북지역의 조선인 행려병 사망자수를 살펴보면 1910년 남성(51명), 여성(6명), 1911년 남성(54명), 여성(12명), 1912년 남성(85명), 여성(8명), 1913년 남성(257명), 여성(33명), 1914년 남성(453명), 여성(75명), 1915년 남성(163명), 여성(32명), 1916년 남성(171명), 여성(39명)이다.²⁷⁾ 사인을 살펴보면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것이 원인불명, 외상, 노쇠 순으로 1916년의 경우 추위로 인해 사망한 동사자가 53명에 이르며 배고픔으로 인해 사망한 기아사가 37명을 기록하고 있다. 이 해 특히 추위와 배고픔으로 사망한 행려병자가 많은 이유는 7월 전북지역의 수해로 부안, 김제지역에서 수재민이 총 15,087명의 수재민을 발생했을 만큼 피해가 컸기 때문이었으리라 판단된다. 집과 식량을 잃은 지역민들이 추위와 배고픔에 견디지 못하고 사망한 것이다. 이들의 사망배경에는 전북의 경우, 대농장이 많은 만큼 소작농의 비율 또한 많아 가뭄이나 홍수 등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가 취약한

23) 「전주에서 교풍회 확대」 『매일신보』 1916년 8월 29일, 2면.

24) 「군산부의 교풍회」 『매일신보』 1912년 3월 1일, 2면.

25) 「전라북도 교풍회의 표창(전주)」 『매일신보』 1916년 5월 3일, 4면.

26) 「전주퇴기의 美舉」 『매일신보』, 1917년 7월 15일, 「행려병인 수용소」 『매일신보』 1917년 6월 8일, 4면

27) 조선총독부, 『조선총독부 전라북도 통계년보』 1913년, 1914년, 1915년, 1916년, 1917년.

구조적인 약점이 잠재하고 있었다.

이광수가 전주를 답사한 1917년은 전 해의 행려병 대량 사망자 발생으로 지역 교풍회의 행려병자에 대한 적극적인 구제활동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조직인 교풍회의 행려병자 구제의 이면에는 관의 주도면밀함 또한 읽을 수 있다. 즉, 행려병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사망자 처리비용을 모두 관에서 부담해야 했으며 전북의 경우 처리 비용의 증가는 무사할 수 없는 경제적인 문제였다. 이광수는 '지상의 천국' 전북이 되기 위한 필수조건으로 '교육 보급', '수리와 경작법의 과학화', '지주와 소작인의 관계 개선', '인민의 생활방법 개량'을 꼽고 있다.²⁸⁾ 이는 지역민의 권한을 넘어 조선총독부의 '신정'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행려병 사망자 또한 교풍회의 일시적인 구제보다는 행려병 사망자 발생의 구조적인 문제점을 바로잡을 조선총독부의 역할이 더욱 중요할 것이다.

VIII. 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과 이리(裡里)

호소카와 농장을 견학한 이광수는 7월 6일부터 7월 8일 오전까지 박영철 군수의 사택에 머물며 이리를 답사했다. 신문사가 기획한 답사지에 없던 이리를 여행하게 된 배경에는 계속된 호우로 인해 교통의 두절로 변경된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이리는 호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생겨난 '일본인 5백호, 조선인 3백호'의 신흥도시로 일본인의 숫자가 조선인보다 더 많았던 '무엇이 될지 모르는 괴물'과 같은 가능성의 도시였다.²⁹⁾ 조선 총독부의 '신정'으로 인해 새롭게 생겨난 도시 이리는 전북의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박기순(朴基順, 1857~1935)의 아들 박영철(朴榮喆, 1879~1939)이 군수를 역임하고 있었다.

이광수의 이리 답사는 문화유산인 미륵사지와 왕궁리 오층석탑을 여행을 기록하고 있다. 유적답사와 함께 이광수가 놀란 것은 환영회였다. 환영회에 참가한 조선인들이 '人事言語凡節이 全히 日本化'하였으며 '外形으로는 完全に 日本化'되어 가는 현황을 비판없이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공주 답사에서 만났던 지역 유지들이 '일본 옷을 입고 일본식 생활'을 하고 '가정 안에서는 고용인까지 일본어를 사용'하는 것에 거부감을 표현했던 이광수는 '유창한 일본어도 아니건만 조선어로는 만족하지 못하는 모양'이라고 비판하고 있다.³⁰⁾ 철도개통으로 인해 새롭게 계획된 도시 이리는 식민지 조선 안의 작은 일본이라 할 수 있으며 일본인들과 함께 사는 이리의 조선인들이 일본인화되어 가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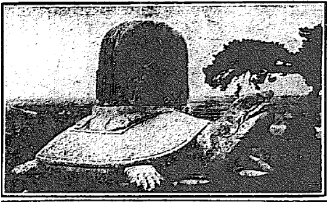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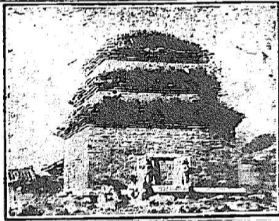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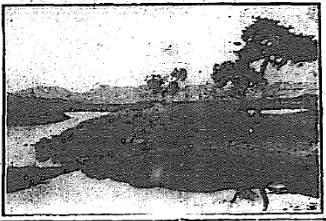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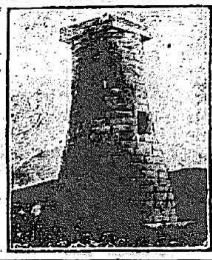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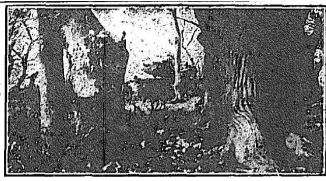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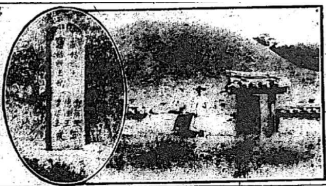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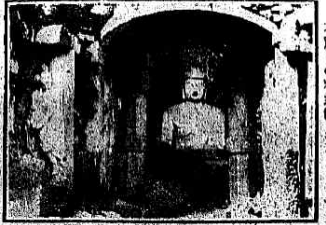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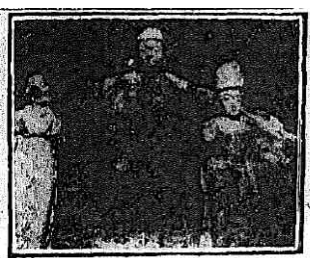
이광수의 이리 답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장소가 백제시대의 유적인 미륵사지와 고려시대 유적인 왕궁리 오층석탑이다. 이광수가 찌는 듯 한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자전거로 이리에서 미륵사지와 왕궁리 오층석탑을 견학하기 위한 이유를 그의 경주답사에서 찾고자 한다.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은 경성일보의 경우, 매일신보에 비해 전남 기행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부산, 마산, 대구 기행은 전혀 게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경주답사는 양 신문 모두 동일하게 13회에 걸쳐 신라와 가야의 유적지들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이 지역은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연재 기사 중 유일하게 사진과 함께 게재되기도 했다.

경성일보 「오도답파여행」의 경우, 총 지면 횟수의 40%가량을 경주 유적을 집중 게재하고 있음이 눈에 띈다. 이러한 배경을 최주한은 당시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성과를 선전하려는 양 신문사의 주도면밀한 기획이라고 지적하고 있다.³¹⁾ 조선고적조사사업은

28) 이광수, 「裡里에서 二」 『매일신보』 1917년 7월 14일.

29) 위의 글.

30) 「湖西より(3)」 『京城日報』 1917년 7월 2일.

 태종무열왕비 8월 24일(경성) 8월 30일(매일)	 분황사 석탑 8월 24일(경성)	 안압지 8월 25일(경성) 9월 2일(매일)
 첨성대 8월 26일(경성)	 계림 8월 26일(경성)	 오릉 8월 29일(경성) 9월 4일(매일)
 불국사 8월 31일(경성) 9월 6일(매일)	 석굴암 석가상 9월 2일(경성) 9월 7일(매일)	 석굴암 석조불 9월 3일(경성) 9월 8일(매일)
 다보탑 9월 5일(경성) 9월 9일(매일)	 석가탑 9월 5일(경성) 9월 9일(매일)	 불국사 석불 9월 7일(경성)

1916년부터 1920년까지 5개년계획으로 이루어졌으며 고대사회와 신라시대, 고려시대까지의 유적이 그 대상이었다. 조선총독부는 보존해야 할 유적으로 원각사지 10층 석탑을 1호로 경기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강원도와 북쪽 일부지역을 포함해 1924년까지 총 193건을 등록했다. 이를 토대로 5개년계획을 시행했으며 한사군 고구려유적(1916년), 삼한, 가야, 백제유적(1917년), 신라(1918년, 1919년), 김해, 양산(1920년), 경주 금관총(1921년)을 조사했다. 조선총독부의 고적조사 활동은 한반도의 여러 지역 가운데 한사군(낙랑), 고구려, 신라, 임나(가야) 및 백제와 관련된 지역은 식민사학 논리의 근거지가 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³²⁾ 즉, 고적조사사업은 조선총독부가 식민통치 논리를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수집하는 일에 역점을 둔 정치적 목적의 성격이 짙은 조사였다고 할 수 있다.³³⁾

이광수가 「오도답파여행」 중 익산을 답사한 1917년은 조선총독부가 백제의 유적인 익산의 미륵사지 당간지주, 미륵사지 석탑, 석불리 석불상, 고도리 쌍석불상 등을 조사한 해이기도 했다. 이광수는 답사에서 미륵사지 석탑을 완전히 중수할 의향이 있다는 조선총독부의 계획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³⁴⁾ 하지만 이광수가 답사하며 보았을 시멘트로 보수된 미륵사지 석탑(1915년)에 대한 기록은 「오도답파여행」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갑자기 계획된 이광수의 이리 답사는 조선총독부의 조선고적조사사업의 성과를 알리기 위한 문화적 식민지화를 위한 답사였음을 알 수 있다.

31) 최주한,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파여행」 『민족문화사연구』 55(2014년), 60쪽.

32)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1931년 12월), 110쪽.

33)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경인문화사, 2009년), 138쪽.

34) 이광수, 「裡里에서 三」 『매일신보』 1917년 7월 15일.

<참고문헌>

- 고토 분지로·손일 옮김, 『조선 기행록』 (푸른길, 2010)
- 김경미, 「이광수 기행문의 인식 구조와 민족 담론의 양상」 『한민족어문학』 62(2012)
- 류시현, 「1910년대 이광수의 시대인식과 전망-매일신보 글쓰기를 중심으로」 『歷史學研究』 54(2014)
- 류시현, 「여행기를 통해 본 호남의 감성-최남선의 심춘순례를 중심으로」 『감성연구』 3(2011)
- 수요역사연구회편, 『식민지 조선과 매일신보 1910년대』 (신서원, 2003)
- 심원섭, 「『일본제 조선기행문』과 이광수의 『오도답파여행』」 『현대문학의 연구』 52(2014)
- 이광수, 김원모·이경훈 편역, 『동포에 고함』 (철학과 현실사, 1997)
- 이순자, 『일제강점기 고적조사사업 연구』 (경인문화사, 2009)
- 이준식, 「일제강점기 친일 지식인의 현실인식」 『역사와 현실』 37(2000)
- 정승진, 마즈모토 다케노리, 「영주에서 식민지 대지주로-일본 귀족 호소가와(細川)가의 한국에서의 토지집적」 『역사비평』 2005년 겨울호
- 정혜영, 「〈오도답파여행〉과 1910년대 조선의 풍경」 『현대소설연구』 40(한국현대소설학회, 2009)
- 최주한, 「이광수의 이중어 글쓰기와 오도답파여행」 『민족문화사연구』 55(2014)
- 하타노 세츠코, 「일본어판 오도답파여행을 쓴 것은 누구인가」 『상허학보』 42(상허학회, 2014)
-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엮음, 『이광수 초기 문장집Ⅱ (1916~1919)』 (소나무, 2015)
- 하타노 세츠코·최주한 옮김, 『이광수, 일본을 만나다』 (푸른역사, 2016)
- 藤田亮策, 「朝鮮に於ける古蹟の調査及び保存の沿革」 『朝鮮』 (1931년12월)

<토론문>

「지역공동체의 변화와 인식-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에 대한 토론문

하채현(군산대)

이광수의 『오도답파기행』에 대한 논문을 잘 읽었습니다. 특히 전북 지역인 군산, 전주, 이리의 1917년을 간접 체험할 수 있어서 흥미로웠습니다. 전반적으로 조선총독부 기관지에 실을 내용을 탐사하는 청년 영웅 춘원의 유약함을 선생님의 글에서 느꼈습니다. 국정 농단 사태와 JTBC 특정 언론인을 보면서 한 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에 대해서 되새겨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당시 <매일신보>와 <경성일보>는 지금의 공중파 방송의 위력을 가졌을 것으로 봅니다. 저는 1910년대 전공자가 아니고 지역공동체에 대해서 문외한입니다. 감히 토론에 붙일 논제를 설정할만하지 못합니다. 여기서는 제가 논문을 읽으면서 든 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토론을 대신하겠습니다.

1. 사건 전후 관계에 대한 확인입니다. 선생님은 춘원의 남도 기행을 『무정』 연재 후 위로 여행의 성격'이라고 보았습니다.(3쪽) 그리고 6쪽에서 '지역을 찾은 중앙의 신문기자 이광수'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1917년 6월 당시 춘원이 <매일신보> 기자이었던지요? (이 쪽 관련 정확한 연보를 확인하지 못한 토론자를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한 국문학에서 작가 연보가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춘원이 스스로 밝히길 <매일신보>의 제안으로 여행을 시작하여 전주에서 새롭게 <경성일보>의 청탁을 추가하였다(『반도강산』(영창서관, 1937)의 서문, 하타노 세즈코(2014: 204) 재인용)고 합니다. 그런데 심원섭(2014: 136)에서 춘원이 경성일보 기자 신문으로 여행을 했다고 합니다. 논저만으로는 사실 관계가 혼동되기 쉽습니다. 정확히 알려 주십시오.

2. 다른 확인입니다. 선생님은 1917년 6월 당시, '신진 소설가에 지나지 않는' 춘원이 가는 곳마다 극진한 대접을 받았음을 인용문과 함께 제시하면서(6쪽) 이는 「社告」(1917년 6월 28일 <경성일보> 1면)에 나온 대로 '양 신문사가 각 지역 관현에게 춘원의 답사 원조를 부탁'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선 저는 <매일신보>에도 답사 원조 부탁의 내용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선생님은 외각주를 통해 <경성일보>만 표시하였습니다. 또 하나는 1917년 6월 춘원의 인기는 하늘을 찔렀다고 들었습니다. 천재 문필가의 등장으로 『무정』에 매료된 사람들이 매일 『무정』을 읽기 위하여 <매일신보>를 기다렸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습니다. (지금 소설가 공지영이나 김연수가 따라갈 수 없는 인기를 누렸다고들 합니다.) 게다가 그 사람이 권력의 핵심인 총독부 기관지를 등에 업고 지역에 온다는데 알아서 융숭한 대접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권력에 밍보이면 달갑지 않은 상황을 부를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매일신보>에 춘원의 답사 일정이 여러 번 홍보되었으니 굳이 양 신문사에서 원조를 부탁하지 않더라도 지역 관리자와 유지들은 춘원을 맞을 준비를 철저히 했을 듯합니다. 하여 지역에서 춘원이 대접을 받은 사실에 대하여 1890년대부터 총독부가 아주 강력한 중앙집권체제를 구축했다고 해석하면 안 되겠는지요?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3. 선생님의 논의는 본론이 총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선물산공진회와 이광수의 『오도답과기행』/조선총독부 칙사 이광수/조선 현황의 축소판’ 전북/군산의 불쌍한 조선인과 자랑스러운 조선인/성공적인 농촌 전주/조선총독부 고적조사 사업과 이리’ 이렇게 춘원의 전북 기행을 정돈해 주셨습니다. 다른 부분들은 수궁이 갑니다만 “전통과 혁신의 공존” 장은 선생님의 논지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선생님이 기술하신 ‘교풍회의 행려병자 구제 이야기’를 가지고 무엇이 전주의 전통이고 혁신으로 봐야 하는지요? 부연 설명해 주십시오. 춘원이 찾은 ‘전주의 전통과 혁신’에 대한 선생님의 탁견을 듣고 싶습니다.

4. 『오도답과기행』을 보면서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 오만가지 생각이 듭니다. 춘원이 기술한 감상들에 진정성(Authentic)이 담겨 있을까? 춘원은 지식인이었는가? 아닌가? 어린 나이에 권력의 맛을 들인 속물에 불과한가? 아닌가? 그렇다면 춘원이 직접 눈으로 담은 1917년 전북의 모습을 신뢰해야 하나? 아닌가? 선생님은 그런 면에서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계신 듯합니다. 첫째 춘원의 서술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춘원은 총독부에 보고서를 제출하기 위해서 파견된 인기 많은 문인에 불과하며 춘원은 그러한 자신의 위치에 충실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둘째 ‘춘원은 상류층만 만나고 그들에게서 겉모습만 답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 독법이 맞는지요?) 그렇다면 이 글은 스스로 오류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논문은 춘원의 시각을 통하여 전북 지역공동체의 1917년의 모습을 재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진정성이 떨어지는, 기행문이라는 외피를 쓴 텍스트’(A)를 가지고 ‘전북의 당시 속내’(B)를 제대로 알 수 있겠는지요? 만약 A보다 B가 먼저라면 A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출발해야 하지 않은지요? 춘원에 대한 부정과 긍정의 시선을 거두고 객관적인 사료를 비교 검토해야 하지 않은지요? A를 중심에 둔다면 탈식민담론을 강화해야 하고 B를 중심에 둔다면 자료 고증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봅니다.

5. 선생님은 『오도답과기행』의 특장으로 두 언어로 동시 발표된 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논문에서 간간히 두 판본의 차이점을 지적하였고 특히 4-5쪽 표는 차이점을 바탕에 두고 만들어졌습니다. 그렇지만 전반적인 논의는 차이점에 근거하기 보다는 공통점에 근거하여 당시 전북의 모습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렇다면 큰 틀에서 『오도답과기행』을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1917년 전북 지역공동체에 대한 쟁점 사항이 무엇인지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지역은 총독부의 의도에 맞게 계몽과 근대화에 충실하다’가 전부인지요? 혹시 춘원이 자기도 모르게 기술해 놓은 전북만의 쟁점은 없었는지요? (예를 들어서 늙은 전북이라든지 젊은 전북이라든지) 전북이 동학의 발원지이기에 저는 자꾸 일말의 기대를 품게 되어 질문합니다.

6. 『오도답과기행』 차이점 측면에서의 질문입니다. 저는 최주한 번역의 <경성일보> 판(소나무, 2015)과 노양환이 해설을 단 <매일신보> 판(우신사, 1979)를 접했습니다. 노양환은 ‘『오도답과여행』은 <每日申報>의 청탁을 1917년 6월에 충남, 전북, 전남, 경남, 경북을 두루 다니면서 신문에 연재한 것인데, 글의 平明流麗함과 신선한 맛으로 독자들의 애독을 받았다. 지금 읽어도 多島海의 풍경 같은 것은 상쾌한 인상을 줄 것이다.’라고 썼습니다. 제가 읽기에도 맛있는 <경성일보> 판과 달리 <매일신보> 판은 재밌는 구석이 있으며 내용도 상당 부분 다릅니다. 그리고 춘원은 적리에 걸린 후부터 일본어로만 씁니다. <매일신보> 심우섭 기자는 목포부터 춘원의 일본어 답사기를 한국어로 바꾸어 연재를 이어갔다고

합니다. 전주까지는 춘원이 모국어와 제2언어로 다 쓸 때입니다. 이렇게 두 언어를 사용한 춘원의 글쓰기 방식이 궁금합니다. 춘원과 마찬가지로 일본어에 능통하신 선생님의 글쓰기를 토대로 하여 선생님은 춘원이 당시 어떤 심정으로 글을 썼을 것으로 보시는지요?